

▶ 참여연구진

저 자 전영준, 전성만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영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와 지역 금융자금의 환류 부족

- 비수도권을 위시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반 지역주민들도 주거 안정, 창업 기회, 기타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강화 요구 증대

-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주체로 간주됨
- 특히, 민간기업의 ESG 경영과 CSR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기관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을 경영 핵심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안 제시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지표가 부재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이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성 및 적실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주체 및 운영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내용

□ ‘지역재투자’로서의 지역사회 기여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활동과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지역재투자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정책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보다 구조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자리 잡아옴
 - 해당 개념은 금융자원이 단순한 사회공헌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되며, 실제 그 기여가 어느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 해당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 내생적 성장이론, 사회적 자본론, 균형성장이론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역의 장기적 성장의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고,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며, 자본의 분산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단순한 선택적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선정 시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 정책결정 과정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됨

-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따른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의 인허가, 합병, 영업 확장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투자와 포용적 금융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재 효과가 제한적이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머물러 수도권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또한,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결과가 참고·활용되고 있으나, 해당 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 간에 평가항목이 중복되거나 평가대상(금융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이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고 유치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간 검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음
- 무엇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항목과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 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님

3.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

- 먼저,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금융기관 공시자료,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실무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타당성과 검증가능성을 갖춘 후보 지표를 유형별로 선정함

- 다음으로, 자치단체 금고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후보 지표별 중요도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평가지표 간 균형성과 우선순위를 확보함
- 마지막으로, 산출된 지표별 중요도를 반영(배점 설정)하여 총점 100점 기준의 평가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금융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표 구성과 배점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 최종 평가지표 체계 산출 결과 및 주요 특성

-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기반의 최종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
 - 최종 정립된 체계는 8개 평가부문, 14개 평가항목, 3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의 배점 구조로 설계됨
 -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측정함과 동시에,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고안된 것임
- 특히, 해당 지표 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인 자금공급 및 금융 접근성과 연관된 정량지표가 전체 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서민 지원 부문의 배점이 각각 가장 높게 형성(18점)되어 평가지표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룸
- 한편,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 인재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부문이 평가지표 체계에 함께 포함됨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당 기여도를 다층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정성평가를 위해 기타 지역사회 기여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금액화·지표화가 어려운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적용상의 유의점

- 최종 평가지표 체계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전국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유형별로 자산·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고, 사업구조·영업범위·지역사회 공헌 여력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대상집단에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 기관 간 비교의 타당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함
- 특히,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 대비 영업망이 제한적이며, 지점·출장소 및 자동화기기(ATM) 설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을 유의해야 할 것임

4.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운영 방안

□ 평가수행 주체의 적합성 검토 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평가(제1안)는 행정 부담과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일괄 평가(제2안)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
- 개별 지방자치단체 직접 평가(제3안)는 지역 금융 수요와 특성을 가장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해도와 현장성 측면의 강점이 있으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측면의 한계도 함께 지적됨
- 한편, 국내·외 공공부문 사례조사를 통해 설정한 적합성 기준 적용 결과,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는 제2안과 제3안 모두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해당 기준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전문성·효율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제2안이 우위를 보인 반면, 지역 이해도 측면에서는 제3안의 강점이 확인됨

□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 구성 방식으로는 자치단체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제1안)과 기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제2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제1안은 전담 평가기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금융·지역경제·사회정책 등 다차원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제2안은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제도 도입이 즉각적으로 가능하고 기존 평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 범위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때, 두 가지 방안 모두에서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역할·권한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평가계획 수립 → 자료 검증 → 심의·의결 → 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1·2안 공통으로, 금융기관 제출 자료는 자치단체 실무부서가 표준 서식에 따라 취합·검증하고, 중앙정부는 지표 정의와 매뉴얼 제공 및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평가의 정확성·일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체계	8

제 2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사회 기여의 개념적 검토	11
1. 지역사회 기여의 일반적인 개념	11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정의	13
제2절 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16
1. 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16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17

제 3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관련 제도	25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25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정금융기관제도’	33

목 차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37
1.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37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42
제3절 소결	50
1.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필요성 및 실효성 확보 방안	50
2.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점	51

제 4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제1절 평가지표 개발 방식	59
1. 지표 개발 목적 및 방향 설정	59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개념 정립	61
3. 지표 개발 절차	63
제2절 후보 평가지표 선정	67
1. 기존 지표의 검토	67
2. 적정성 검토를 통한 후보 지표 선정	98
제3절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115
1.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방식: 델파이(Delphi) 조사	115
2. 지표별 중요도 산정 결과(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8
제4절 소결: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정립	138
1.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138
2. 최종 평가지표 체계 산출 방식	139
3. 최종 평가지표 체계 산출 결과	144

제 5 장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운영 방안 모색

제1절 평가수행 주체의 적합성 검토	151
1. 적합성 검토 방식 및 기준	151
2. 적합성 검토 결과	155
제2절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62
1. 유사 제도 사례 검토	162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 구성·운영 방안 제시	171
참고문헌	179
부록	183

표 목차

표 3-1	미국 CRA의 주요 평가항목	30
표 3-2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평가대상 기관	38
표 3-3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배점	40
표 3-4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평가등급 산정 기준	41
표 3-5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 결과	42
표 3-6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제도의 주요 연혁	43
표 3-7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2025년 1월 기준)	44
표 3-8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47
표 3-9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54
표 4-1	'지역자금 역외 유출' 평가항목	68
표 4-2	'중소기업 지원' 평가항목	68
표 4-3	'서민대출 지원' 평가항목	69
표 4-4	'인프라 투자' 평가항목	70
표 4-5	'지역금융 지원전략' 평가항목	71
표 4-6	수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2
표 4-7	은행협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상의 총괄 현황 공시 내용	82
표 4-8	은행협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상의 금융기관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공시 항목	84
표 4-9	'소매대출 평가(Retail Lending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89
표 4-10	'소매대출 평가(Retail Lending Test)'의 정성평가 요소	89
표 4-11	'소매금융서비스·상품 제공 평가(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90
표 4-12	'소매금융서비스·상품 제공 평가(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의 정성평가 요소	91
표 4-13	'지역사회개발 금융 평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92

표 4-14	'지역사회개발 금융 평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의 정성평가 요소	93
표 4-15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평가(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94
표 4-16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평가(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의 정성평가 요소	94
표 4-17	일본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의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기준	97
표 4-18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후보 지표	112
표 4-19	델파이 조사 대상	116
표 4-20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8
표 4-21	지역기업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9
표 4-22	지역서민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0
표 4-2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1
표 4-24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1
표 4-25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2
표 4-26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3
표 4-27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3
표 4-28	지역기업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4
표 4-29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4

표 목차

표 4-30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5
표 4-31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5
표 4-32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6
표 4-33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7
표 4-34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8
표 4-35	지역기업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9
표 4-36	지역서민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0
표 4-37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0
표 4-38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1
표 4-39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2
표 4-40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2
표 4-41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3
표 4-42	지역기업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4
표 4-4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4
표 4-44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5

표 4-45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5
표 4-46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6
표 4-47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7
표 4-48	평가부문별 배점 산출 결과	140
표 4-49	평가항목별 배점 산출 결과	141
표 4-50	세부 지표별 배점 산출 결과	143
표 4-5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최종 평가지표 체계 (일반은행 및 상호금융 대상)	145
표 4-5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저축은행 대상)	147
표 5-1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56
표 5-2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 적합성 검토 결과	161
표 5-3	CRA 평가관(Examiner)의 자격요건	164
표 5-4	CRA 평가 절차 및 운영 방식	165
표 5-5	서울특별시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69
표 5-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170
표 5-7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자료 취합 및 검증 체계	17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8
그림 2-1 2024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	19
그림 2-2 2023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금융지원) 비중과 GRDP(실물경제) 비중 간 차이(%)	20
그림 4-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3단계 과정	66
그림 4-2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73
그림 4-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75
그림 4-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배점 방식 사례	76
그림 4-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기후·환경 요소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77
그림 4-6 관내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실적·계획 수준에 관한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78
그림 4-7 관내 서민 및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실적·계획 수준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사례	79
그림 4-8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사례	80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자원 배분 문제 발생

-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반 지역주민들도 주거 안정, 창업 기회, 기타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결국, 이 같은 현상의 발생은 지역의 공동화 및 소멸 위기와도 직결되는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강화 요구 증대

-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주체로 간주됨
- 민간기업의 ESG 경영과 CSR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기관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을 경영 핵심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기업 또는 주민의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그 특성상,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및 기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현재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금융지원, 장학사업,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지표가 부재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특히, 금고 지정 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으나, 당해 제도는 평가대상에서 상호금융기관을 제(除)하고 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시·도만을 평가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의 평가를 강화하고, 그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적실성 높은 평가지표와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관련 주요 제도 검토 및 현황 파악**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유도하는 국내·외 주요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기준(지표 및 측정방식 등)의 취합 및 그 특징 분석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에 적극 활용 가능한 공통적인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마련**
 - 금융기관의 금융 분야(지역별 여·수신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지원, 금융 인프라 구축 수준 등) 및 비금융 분야 (장학사업, 금융소비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를 대상으로 한 정량·정성 지표 탐색

- 시중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전반을 평가할 수 있되, 특정 유형에 크게 유리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갖춘 지표 마련

□ **효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평가 주체 및 운영 방안 등) 모색**

-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일괄 평가 방식과 평가 도구 공유를 통한 자치단체별 자체평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평가주체를 제시
-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검토
- 해당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효율적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분석대상에 해당함
-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지표 및 측정방식 등)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함

□ 시간적 범위

- 202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에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기준을 분석하되, 자치단체별 가장 최신의 금고 지정 평가결과(당시 평가기준 및 입찰 참여 금융기관의 실제 평가점수 등) 자료를 함께 활용함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처음 제정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모든 관련 논의와 문헌, 유사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 내용적 범위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제반 분석(각종 현황 및 사례 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보편적인 평가지표 마련 및 효율적인 평가체계(평가 주체 및 절차 등) 제시

2. 연구방법

□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금고 지정 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기준(세부 지표 및 측정방식 등)에 대한 각종 기초 통계분석 수행
- (목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유형 분류 및 자치단체의 공통된 평가지표 추출

□ 문헌분석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주요 제도 및 학술적 논의를 담고 있는 각종 문헌 검토
- (목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갖는 의의 및 중요성, 해외 유사 사례 검토,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사례분석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기준 및 그 방법과 최근 평가결과에 대한 사례분석
- (목적) 개별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인터뷰

-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 금융기관(주요 은행 및 상호금융 등)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
- (목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에 관한 기존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모든 자치단체 단위에 적용 가능한 공통된 평가지표 추출

□ 설문조사

-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기법 활용
- (목적) 평가지표별 측정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가중치) 설정

3. 연구수행체계

| 그림 1-1 | 연구수행체계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p>서론</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배경, 필요성, 목적 정립 <p>▽</p>	<p>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조사</p> <p>▽</p>
<p>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기여의 개념적 검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논의 <p>▽</p>	<p>문헌분석 및 자료조사</p> <p>▽</p>
<p>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검토</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일본자치단체의 '지정금융기관 제도' 검토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현황 및 한계 분석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개별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검토 국내·외 주요 제도에서의 시사점 도출 및 세부 평가기준·방식 정리 <p>▽</p>	<p>자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자치단체 공무원, 금융기관 담당자, 학계 종사자 등 대상)</p> <p>▽</p>
<p>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기준을 통한 기존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지표 선정 최종 평가지표의 선정 및 지표별 우선순위 산정 <p>▽</p>	<p>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델파이 기법 등)</p> <p>▽</p>
<p>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체계 (평가 주체 및 절차 등) 제시 	<p>전문가 인터뷰</p>

제 2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사회 기여의 개념적 검토

제2절 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사회 기여의 개념적 검토

1. 지역사회 기여의 일반적인 개념

□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

- 지역사회 대한 기여는 특정 주체가 자신이 속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대해 물질·인적 자원, 지식, 네트워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포괄함(Ismail, 2009)
- 이는 과거 단순한 자선·기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 지역 환경·안전 여건 개선 등 보다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음
 - 특히 지역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자치단체·기업·금융기관·시민단체 등)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기여의 내용도 한층 다면화되고 구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신재민 외, 2023)
-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여(고용·투자·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기여(복지·문화·교육 지원,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구분 가능함
 - 경제적 기여는 지역 내 고용 창출, 투자 확대, 관내 기업과의 거래 활성화,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고도화 등을 포함함
 - 사회적 기여는 복지 향상, 문화·체육·교육 지원, 환경보전 활동 등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이 주를 이룸
 - 최근에는 여기에 환경적 기여(친환경 인프라 조성 및 탄소감축 활동)와 지역 거버넌스 참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제 해결 참여) 등도 포함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의 범위가 보다 확장되고 있음

- 이처럼 지역사회 기여는 단일한 양상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며, 지역의 특성, 수요, 문제 구조 등에 따라 그 방식과 효과도 크게 달라짐

□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기여

-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기여는 전통적 개념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출발하여,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CSV(Creating Shared Value) 등 보다 진화된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해석됨(Passas, 2024)
 - 즉,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전략·리스크관리·지속가능성 지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은 기업이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윤리경영, 사회공헌, 기부·봉사, 지역사회 지원 등이 핵심 축을 이룸
 - 초기 CSR은 자발성과 도덕적 책무성에 근거했으나, 기업 규모 확대와 사회적 기대 증가에 따라 점차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음
 - 특히 지역사회는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자 이해관계자 집단이기 때문에(김재현 외, 2012),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는 CSR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간주됨
 - 이는 단순 후원사업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지속가능 경영 프레임으로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임
 - 이 가운데 사회(Social) 영역에는 주로 고용 안정, 인권 보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이 포함됨
 - 특히, ESG는 단순한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시장(혹은 투자자) 및 규제 당국 등의 요구에 의해 그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CSR과 구별됨
 - 즉, CSR이 비교적 자발적이고 도덕적 성격에 기초한다면,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지향적·평가지향적 체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Patil, 2021)

- 최근에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가 공유가치창출을 의미하는 CSV 개념으로 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냄(Porter & Kramer, 2011)
 - CSV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 및 사업 기회를 창출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임
 - 예를 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거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CSR이나 기부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 가치가 선순환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기여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음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정의

□ ‘지역재투자’로서의 지역사회 기여

- 앞선 논의에 따를 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활동과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까지도 포함 한다고 볼 있음
 - 즉,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지역과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 이해할 수 있겠음(Sutton & Jenkins, 2007)
- 이와 같은 개념은 금융기관이 단순한 상업적 조직이 아니라 지역경제 생태계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에 기원함
 - 금융기관의 자원 배분 방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기여는 일종의 지역적 책임(local responsibility)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금융기관은 자신이 영입하는 지역의 필요(needs)를

충족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 미국의 금융감독기관(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의 시각과도 궤를 같이함¹⁾

-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지역재투자(community reinvestment)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정책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음
 - 이는 특정 국가의 제도나 법률에 한정된 용어라기보다,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적 언어에 가까움
 - 금융기관은 지역사회로부터 예금·지불거래·금융정보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며, 동시에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게 대출·서비스·금융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함
 -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을 되돌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 바로 지역재투자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라는 개념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보다 구조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자리 잡아옴(Wachter & Ding, 2020)
 -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의 영역을 넘어, 금융자원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되며, 실제 기여가 어느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 해당함
 - 즉, 금융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자원 흐름, 지역의 구조적 필요, 그리고 지역단위 실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규정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로 기능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은 금융기관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식과 그 성과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줌

1)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 (2023). Community Reinvestment Act: Final Rul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국내 주요 제도에서의 ‘지역재투자’ 개념

-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5.3.17.)에 따를 때, 지역재투자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를 하고, 그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지역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자금지원,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그 밖에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해당함
- 또한, 2021년 5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이종필 외, 2022)
 - 해당 조례에서는 지역재투자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밖에, 2018년 10월에 도입된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제2절

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1. 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 경제적 인프라로서의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 투자 기능을 통해 국가 또는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경제 인프라에 해당함(Levine, 2005)
 -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할수록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의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 기능 외에도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뒷받침함
-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한 영리조직을 넘어 공적 책임(public responsibility)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함(Stiglitz, 1994)
 - 금융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인프라로서 금융기관이 사회적·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책임 있는 금융 활동을 수행할 때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음.
 - 특히 정보 비대칭은 금융기관이 경제주체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지역 내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윤석현·박래수, 2009), 금융기관의 심사·지원 방식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침
 -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책임 있는 금융활동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취약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임(이건범, 2010)
 -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를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로 이해될 수 있음

□ 지역 경제활동의 촉매자

- 금융기관과 지역사회는 단순히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를 넘어, 상호 순환적(interdependent and circular) 관계를 형성함
 - 이는 금융기관과 지역경제가 서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쪽의 변동이 다른 한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지역 내 자금을 재투자하면 고용 증가→가계 소득 확대→소비 진작→기업 매출 증대→금융수요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촉매자(catalyst) 역할을 수행하게 됨 (Samolyk, 1992)
- 또한, 금융기관은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예컨대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설비투자·운전자금 금융이 중요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영세 농가·어가 대상 특화금융이 필요함
 - 금융기관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임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 경제이론 관점에서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필요성은 다양한 경제이론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 먼저,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따를 때, 금융기관은 지역의 장기적 성장의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로 기능함
 -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이 단순히 외부적 요인인 기술 진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지식의 외부효과, 혁신활동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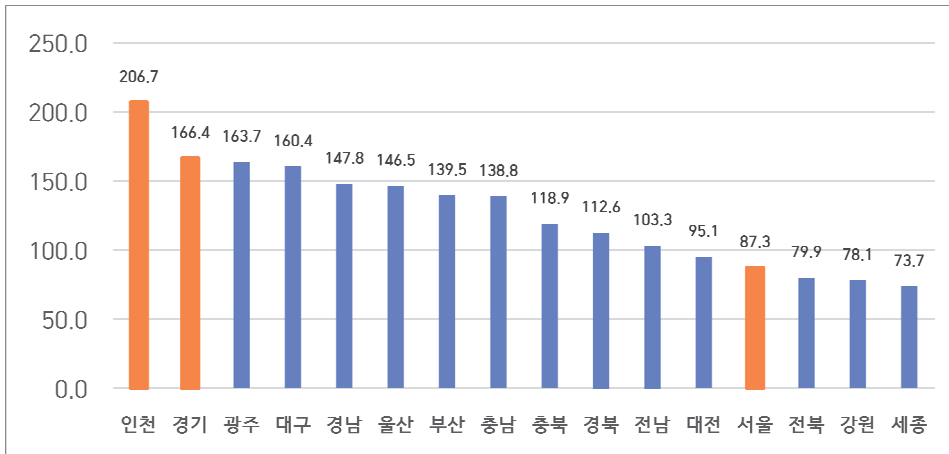
- 내부 요인에 의해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함(Romer, 1986; Lucas, 1988)
 - 따라서, 금융기관의 장학사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지역의 벤처·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혁신 역량을 증대시킴
- 또한, 사회적 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에 해당함
- 사회적 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은 신뢰(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임을 주장함(Putnam, 1993)
 - 이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나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후원은 금융기관과 지역사회 간 신뢰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협력까지도 증진시킴
 - 이처럼 사회적 자본이 증대되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Coleman, 1988),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해당 지역에 신뢰와 협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균형성장이론(Balanced Growth Theory)에 따를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국가 차원의 불균형 완화 정책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균형성장이론은 Nurkse(1953)의 저서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이 특정 산업에 대한 단독 투자가 아니라 여러 산업 부문에 대한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함
 - 즉, 다수의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때 서로의 시장을 창출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봄
 - 이처럼 균형성장이론은 본래 산업 간 균형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논리는 현대에 와서 지역 간 균형발전 논의로도 확장·적용되고 있음(Myrdal, 1957; Blakely & Leigh, 2013)

- 이에 따라 때, 특정 지역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기 성장도 제약되므로(OECD, 2023), 금융기관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자원을 분산적으로 배분해야 함
- 결국 이러한 금융지원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됨

□ **상황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금 유출입 현황) 일부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자금이 당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을 보임²⁾

| 그림 2-1 | 2024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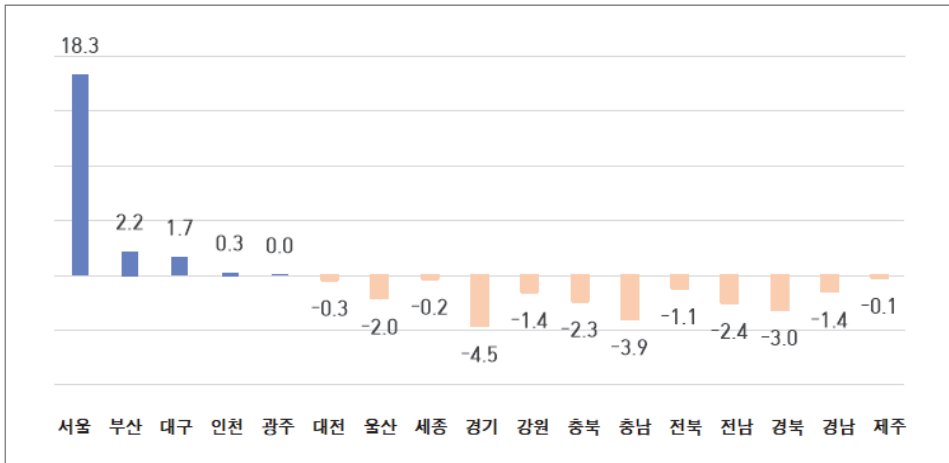


주: 1) 예금취급기관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이 포함됨
 2) 서울은 대기업·부유층 등의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예금)이 여신(대출)보다 크게 나타남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 다만, 지방 소재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예대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음

- (실물경제와의 비교) 2023년 기준 비수도권이 전국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7%나 당해 지역에 대한 여신 비중은 약 32.6%로, 비수도권 지역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특히,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금융기관의 여신이 집중되고 있음
- 이처럼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재투자되지 않거나 역외(수도권이나 대도시 등)로 유출될 경우, 지역 내 자본 축적은 정체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공동화(community hollowing-out)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이는 곧 산업 쇠퇴, 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Myrdal(1957)의 누적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 이론에 따르면, 일단 자본과 인력 등 경제적 자원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할 경우, 고용·투자 축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확대·가속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짐

| 그림 2-2 | 2023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금융지원) 비중과 GRDP(실물경제) 비중 간 차이(%)



주: 해당 값은 지역별 여신(금융지원) 비중에서 GRDP(실물경제) 비중을 뺀 값임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및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단순한 선택적 공헌이 아니라, 지역 내 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역외 유출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중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전략적 파트너 혹은 상호의존적인 동반자로서 기능함
 -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고용 창출, 인구 이동, 소비 패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경제의 활력 수준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나아가 금융기관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투자는 지역 공동화와 소멸 위험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핵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 3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관련 제도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제3절 소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관련 제도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이하 CRA)는 1977년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 시행되어 온,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대표적인 금융규제 장치임
 - CRA는 금융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흡수한 예금 자금을 다시 해당 지역으로 환원(reinvestment)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금융기관을 단순한 사적 영리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적 행위자로 규정한 최초의 입법 사례로 평가됨
- CRA가 제정되기 이전 미국 사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대출·투자 행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음
 - 특히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레드라이닝(redlining)’ 관행은 금융기관이 저소득층·흑인·소수인종 밀집 지역을 지도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해당 지역에 속한 주민과 기업의 대출을 체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양준호, 2021)
- 이러한 차별적 금융행위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체의 지역별 경제지도를 크게 왜곡하고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심화하였음
 -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예금과 수수료 수익 등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았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세수 기반 약화, 공공서비스 악화, 범죄 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음(양준호, 2021)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금융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커졌음
-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의회·연방정부·주요 시민단체 등은 금융기관이 지역의 신용 수요를 정당하게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도입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CRA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규범적 장치로 등장했음(한국은행, 2006)
- 특히 CRA는 금융기관이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신용 요구(needs)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 기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역별 행위를 평가·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이러한 CRA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 간 금융 접근성의 형평성 제고
 - 금융기관이 낮은 신용등급 및 소득, 혹은 특정 인종적 구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사회가 기본적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촉진
 - 금융기관이 흡수한 지역 예금을 다시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주택 자금·소기업 지원·지역개발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흐름을 활성화함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 지역의 신용수요 충족을 통해 지역 내 고용·소득·주택·기업 활동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간 장기적 불균형 성장을 완화함
- 이처럼 CRA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 공헌 차원이 아니라, 법령에 기반한 제도적 책무로 규정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로서 세계 여러 국가의 금융·지역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되고 있음

□ 제도 시행 경과

- CRA는 1977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정과 보완을 거치며 변화해 왔음

- 제정 초기 CRA는 대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선언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 방식의 정교화와 디지털 금융 확산 대응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화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옴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 1977년 제정 초기(원칙 중심의 법률 도입)
 - CRA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금융기관이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수준이었음
 - 당시에는 평가 체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음
 - 1980~1990년대 초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금융규제 강화 흐름
 - 1980년대에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CRA는 점차 금융기관 규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음
 - CRA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금융기관의 영업 허가, M&A 승인의 필요 조건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의 이행 의무는 강화됨
 - 1995년 대규모 개정: 성과 중심 평가체제로 전환
 - 해당 개정은 CRA 시행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히는데,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형식적인 문서 제출 중심 평가에서 탈피, 정량적 실적 기반 평가 도입, 대출·투자·서비스 영역으로 평가요소 구체화, 저소득 지역(LMI 지역) 대상 실적 반영 강화 등의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전면 재편함
 - 이 개정 이후 CRA는 사실상 미국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음
 - 2000~2010년대: 디지털 금융·지점 축소 대응 논의
 -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금융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CRA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특히 대형 은행들은 물리적 지점은 축소하면서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평가 체계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음

- 2023년 개정: CRA 현대화(Modernization)
 - 연준(FRB), FDIC, OCC는 2023년 CRA 현대화 규정을 최종 확정하며,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는 디지털 금융 기반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였음
 - 전통적 지점 기반 평가를 넘어 전국적 대출 행위까지 평가 범위 확대, 디지털 बैं킹의 확산으로 새로운 평가구역(setting) 도입, 지역사회 개발투자(CD Investment) 평가 강화, ESG 성격의 투자·대출에 대한 평가 포함, 데이터 보고 및 공개 의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함
 - 이 개정은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CRA의 정책 목표(지역사회 기반 신용공급 보장)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으로 평가됨

□ 평가 주체 및 대상

- CRA는 연방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바, 그 평가 주체는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 연방예금보험공사(이하 FDIC), 통화감독청(이하 OCC) 세 곳이 담당함
 - 당해 세 기관은 금융기관의 규모, 영업구조, 대출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CRA 평가(CRA Examination)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전적으로 공개됨
- 이때, CRA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FDIC의 보호를 받는 모든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
 -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
 -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은 별도의 제도로 평가(일부 예외 존재)
- 특히 CRA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지역(assessment areas)”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3년 개정을 통해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평가범위를 확장하였음

□ 평가방식

- CRA는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금융공급 수준을 평가하되, 기관 규모별 차등 평가체계와 지역기반 평가 원칙, 정기 평가결과의 규제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 반영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님(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 이러한 평가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과 기반 평가(performance-based assessment)
 - CRA는 문서나 계획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과(output)를 중심으로 평가함
 - 이는 1995년 개정 이후 강화된 원칙으로, 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 규모, 지역사회 개발 투자 실적,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대출·투자·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금융기관 규모별 차등 평가체계
 -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은행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상이한 평가 방식이 적용됨
 - 이는 대형은행과 지역 기반 소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적 조치임
 - 소형은행은 대출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며, 대형은행은 대출·투자·서비스의 세 가지 분야를 모두 평가받음

| 표 3-1 | 미국 CRA의 주요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 의의	
평가항목	대출 평가 (Lending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규모(건수·금액) • 저소득 및 중·저소득(LMI) 지역 대상 대출 비율 • 대출의 지리적 분포 • 중소기업·농가 대상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신용공급 수준 확인 • 금융 소외지역 지원 여부 평가 • 고소득층·특정 지역 쏠림 방지
	투자 평가 (Investment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개발투자 규모 • 저소득층 주택 및 지역 인프라 투자 • 소규모 기업·사회적 기업 투자 • 비영리·공익기관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구조적 발전 기여 • 지역 자본 축적 및 혁신 지원 • 지역사회 파급효과 확인
	서비스 평가 (Service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 및 ATM 분포의 적절성 • 저소득 지역 대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 온라인·모바일 뱅킹 제공 여부 • 금융교육·상담 프로그램 • 지역사회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접근성 확대 • 사회적 배제 완화 • 금융기관과 지역 간 신뢰 구축
	평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은행: 대출+투자+서비스 모두 평가 • 중형은행: 대출 중심 평가 (투자·서비스 보완) • 소형은행: 단순 대출 중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규모별 맞춤 평가 • 평가결과를 인수·합병, 신규 지점 개설 등에 반영 • 금융기관 행동 변화 유도

출처: Federal Reserve Board(FRB), Community Reinvestment Act(CRA) Examination Procedures

- 지역기반 평가(assessment area 기준)
 - CRA 평가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지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임
 - 이는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점 단위의 지역별 평가가 제도의 기본 설계 철학에 해당함
 -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디지털 기반 대출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범위를 확장하였음
- 평가결과의 행정적 연계
 - CRA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그 결과를 통해 평가대상은 Outstanding, Satisfactory, Needs to Improve, Substantial Noncompliance의 네 등급으로 구분됨

- 이때, 중요한 점은 당해 평가결과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신규 지점 개설, 조직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지역사회 의견(community input) 반영
 - CRA는 금융기관과 사회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평가과정에서 지역 주민, 비영리조직, 지역개발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순 정량지표 중심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정성평가 요소로 기능함

□ 평가결과의 활용

- 앞서 언급한 것처럼, CRA 평가결과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성과 공개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략적·제도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함(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 이는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선택적 혹은 임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책무로 받아들여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임
- 이러한 CRA 평가결과의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영업 인허가 심사와의 연계
 - CRA 평가결과는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은행 인수·합병(M&A) 승인, 지점 신설·이전·폐쇄 승인, 조직 변경(지주회사 전환 등), 광의의 영업 범위 확대 신청 등과 같은 주요 영업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미국 연방 규제기관(FRB, OCC, FDIC)은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인허가 사항을 신청할 때 해당 기관의 최근 CRA 평가결과와 성과 기록(performance record)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평가결과가 Needs to Improve 또는 Substantial Noncompliance인 경우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함
 - 평가등급에 따른 규제·감독 강도 차등화
 - 규제기관은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 심층 현장검사 강화, 지역사회 의견 청취 확대 등 추가적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는 CRA 준수 수준이 낮은 금융기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함
- 금융기관의 평판(reputation) 및 시장적 영향
 - CRA 평가결과는 전적으로 공개되며, 지역사회 단체, 소비자단체, 지방 정부, 언론 등이 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평가함
 - 특히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서 금융기관의 평판은 대출·투자·협력사업의 성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Needs to Improve 등급을 받는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지방정부의 협력사업 제한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역 기반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및 내부 자원 배분에 대한 영향
 - CRA 평가결과는 지역사회 개발 대출 및 투자 규모 확대, 저소득 지역 지점 유지 또는 신규 개설 전략 조정,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개발 관련 부서 또는 조직 강화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장기 전략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함
 - 특히 대형은행은 평가등급 유지·향상을 목표로 전담 CRA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대출·투자 전략을 수립·관리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CRA 성과가 중간관리자 또는 지점장의 핵심성과 지표(KPI)에 포함되기도 함
- 지역사회 개발 시장(CD Market) 형성과 제도적 파급효과
 - CRA 평가체계는 미국의 지역사회 개발 금융시장(CDFI, LIHTC, NMTC 등)을 활성화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음
 - 금융기관이 CRA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출·투자를 늘리면서, 저소득층 주택, 소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 투자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짐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정금융기관제도’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일본의 지정금융기관제도(指定金融機関)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의 공금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 수납(세입)·지급(세출) 등 출납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됨
 - 다만,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금융기관 및 수납대리금융기관 제도를 병행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복수기관이 공금 관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단일 주(主)금고 + 복수 대리금융기관)
- 이때, 「지방자치법」 제2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확실하고 효율적으로(確實かつ効率的に)”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5조의4 역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정령(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절차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비록 두 조문이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금·기금의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지정금융기관의 선정·운용 과정에서 고려되는 해석상 준거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정금융기관 제도는 1964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고(本金庫)’ 중심 체계가 민간 금융기관 예금·결제체계와 연동되는 형태로 재정비된 데에 기원함
 - 민간 금융기관의 예금계정 및 결제 기능을 지방회계 출납체계 안으로 모두 편입할 수 있게 함
 - 이후 해당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 공금관리 체계로 확립되었음
 - 이 같은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관리 기능을 전문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과 접목함으로써 공금의 안전성 제고, 출납업무의 효율화,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2년 예금지급보장제도(일명 페이오프)의 전면 해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정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역량을 이전보다 훨씬 더 중시해야 하는 환경적 변화를 가져옴
 - 예금지급보장제도의 해제에 따라 예금은 결제성 계좌를 제외하고 1,000만 엔+이자까지만 보호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강화하였고, 금융기관 지정도 이에 부합하도록 수행함
 - 예를 들어, 도쿄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자금관리방침’을 정비하여 금융기관 지정 및 공금 운용의 기본 원칙을 안전성·유동성 중심으로 재확립하였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법」 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지만, 법령은 지정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와 절차만을 규정할 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무적 기준·서비스 기준·배점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음
 - 즉, 일본의 법체계는 절차·지위만을 규정하고, 실질적 기준은 자치단체의 자율 판단에 맡긴 구조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중앙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인 특성임
 - 이 때문에 실제의 평가 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마련한 자금관리방침, 지정·검사 요강, 지정금융기관 선정요령, 프로포절 심사기준표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됨
- 이러한 분권형 구조 속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일정 범위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그 반영 방식 역시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함
- 광역(도·부·현) 및 대도시 자치단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유동성·실무

처리능력 등 기본적 적격성 판단이 우선되며, 지역사회 기여는 주로 정성적 판단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함

- 거래선 재검토 또는 재지정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지자체에 대한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이를 정량화하거나 배점화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는 사례는 제한적임
- 예컨대, 도쿄도(東京都)의 ‘자금관리방침’과 지정·검사 요강은 금융기관 선정 시 안전성·유동성, 감독기준 충족 여부, 재무지표 중심의 운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공헌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점수화한 공식 문서는 공개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아울러 나고야시(名古屋市) 역시 공금 취급 금융기관 안내, 자금운용 방침 등을 통해 운용 원칙과 기관 현황, 고시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기여도를 독립 배점항목으로 설정한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치바현(千葉県)의 ‘공금관리방침’에서는 금융기관 지정 시 “도민의 편리성 및 지역경제에의 기여를 고려하여 지방법인을 우선한다(配慮し、地元金融機関を優先する)”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량화하거나 구체적인 배점표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기후현(岐阜県)에서도 지정금융기관 심사 시 “경영의 건전성·안정성, 현민의 편의성, 지정업무의 실시조건·체제, 현정 및 지역에의 공헌상황(地域への貢献状況)”을 고려했다고 의회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평가기준이나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밖에, 오사카시(大阪市)는 ‘금융기관 경영상태 평가기준 요강’(2024.9.27)을 통해 수익성·건전성·유동성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관계 재검토 단계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市)에 대한 공헌도”를 반드시 정성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 평가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시·정·촌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세부화하고 배점표를 공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공헌’ 혹은 ‘어필 포인트’를 독립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 기후현)는 ‘지정금융기관 등 선정 심사기준’을 통해 총점 100점의 배점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공헌·어필 포인트의 충실도’를 독립 소항목(3점)으로 반영하고 있음
- 이는 일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실제 점수화하여 공식 평가에 포함한 명확한 사례에 해당함
- 아울러, 남지타초(南知多町, 아이치현)는 ‘지정금융기관의 선정요건’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지정금융기관으로서의 어필 포인트” 항목을 통해 지역공헌 관련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난시(阪南市, 오사카부)도 세부 배점표는 비공개이지만, “어필 포인트” 항목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여 관련 내용이 정성평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성적 고려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정량적 판단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카미가하라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정량형 평가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즉, 일본의 지정금융기관제도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일정한 의미를 갖고 평가에 반영되지만, 그 구체적 구현 방식은 자치단체별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임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1.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년 10월 당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시범실시 및 세부 평가항목 확정을 거쳐 2020년부터 매년(1년 주기)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 등을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여 재투자(대출)하게 함으로써,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지역 내 자금 공급,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금융회사의 책임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이 목적이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한다는 특징을 지님
- 제도 도입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회사에 예금된 자금이 다시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났음
 - 2016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대율을 보면, 인천(125.6%), 경기(111.0%)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하를 기록하였음
 - 이는 지방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 실물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금융기관 본점이 위치한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됨
 - 또한, 당시 지방의 생산비중(GRDP)은 약 50%를 차지하였으나, 여신 비중은 40%에 미달하였음
 - 특히 고신용 기업과 가계가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음

□ 평가 주체 및 대상 지역·금융기관

- 평가주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지역 대표 등으로서 민·관 합동평가 방식으로 진행됨
-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해당함
 - ‘지역채투자 평가제도’는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지방에 대한 금융분야 자금 환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도권은 제외함
 - 지역 경제상황 및 금융접근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권역(경상/전라 등)이 아닌 시·도별로 구분하였음
 - 다만,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전국은행과 지방은행도 영업구역 중 해당 지역에 영업점이 없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에 해당함(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 2025년 기준, 15개 국내은행(시중은행 7곳, 특수은행 3곳, 지방은행 5곳(산업·수출입은행 제외) 및 12개 상호저축은행(2023년말 기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복수 지역에서 영업)이 속함

【표 3-2】 금융위 ‘지역채투자 평가제도’ 평가대상 기관

구분		권역별 대상기관
일반은행	전국은행(9)	신한, 우리, SC, 하나, 씨티,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지방은행(6)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저축은행(12)		한국투자, 대신, OK, 웰컴, JT, JT친애, OSB, SBI, 페퍼, 애큐온, BNK, 예가람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0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채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전문은행: 지역별 지점이 없어 지역 간 은행접근성에 차이가 없음을 고려함

- 외국은행 지점 및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부분 소비자금융을 취급하지 않고, 외은지점은 단일지점별로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함
-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법상 영업구역에 대해 의무대출 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으므로 영업구역이 모두 수도권인 저축은행은 제외함
- 소규모 저축은행: 낮은 대출경쟁력 등으로 은행의 노력에 따른 권역 내 대출 조절이 어렵고 지역자금 수신규모가 작음

□ 평가항목

- 2024년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크게 정량평가(4개 부문, 10개 항목)와 정성평가(1개 부문, 5개 항목)으로 구분됨
 - 정량평가 부문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이고, 정성평가 부문은 ‘지역금융 지원전략’임
-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 각 평가부문의 배점은 은행(시중·특수·지방은행)과 저축은행 간에 상이함
 -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업권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시중은행 등의 경우 전국 단위 영업망과 대규모 자금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 책임을 더 크게 부여받은 것으로 보임
 - 저축은행은 지역 기반, 서민·중소기업 중심 금융을 제공하는 업권 특성에 따라 지역 자금의 재투자와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프라 투자(15점)’는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는데, 저축은행은 소규모 지역 기반 영업으로 인프라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두 업권의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3-3 】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일반은행	저축은행
1. 지역자금 역외 유출 (35/50)	① 지역별 예대율 ▶ 전년 대비 개선수준 (가점)	15 (+1)	25 (+1)
	② 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 ▶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과리율	15 (中7.5)	20
	③ 지역 여신 증가율	5	5
2. 중소기업 지원 (25/20)	① 지역별 중기대출/총 여신 ▶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가점)	15 (+0.4) (+1.0)	10 (+0.5) (+0.2)
	② 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과리율	5	5
	③ 지역 중기대출 증가율	5	5
3. 서민대출 지원 (15/20)	① 지역별 서민대출/가계대출 ▶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10 (+0.4)	15 (+0.6)
	② 서민대출 증가율	5	5
4. 인프라 투자 (15)	① 인구 천명당 점포 수 ▶ 점포 신설 (가점) ▶ 점포 폐쇄 (감점) ▶ 점포 폐쇄 사전통지 등 미실시 (감점) ▶ 우체국 창구 제휴 (가)	7.5 (+0.2) (△0.2~ △1.0) (△1.0) (+1.0)	-
	② 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 자동화기기 신설 (가점) ▶ 우체국 자동화기기 제휴 (가점)	7.5 (+0.1) (+1.0)	-
5. 지역금융 지원전략(정성) (10)	① 해당 지역 경제기여도	2	4.5
	② 지역기업·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금융 환경 기여도	2.5	-
	③ 지역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2.5	3.5
	④ 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2.5	1.5
	⑤ 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0.5	0.5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0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 등급 및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별 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 후, 이를 종합(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산정함
 - 최종 평가: (최우수) 4.0초과, (우수) 3.5초과~4.0이하, (양호) 3.0초과~3.5이하, (다소미흡) 2.5초과~3.0이하, (미흡) 2.5이하

[표 3-4]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평가등급 산정 기준

평가점수	90점 이상	85~90점	80~85점	75~80점	75점 미만
평가등급(점수)	최우수(5점)	우수(4점)	양호(3점)	다소미흡(2점)	미흡(1점)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0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2024년도 평가결과, 시중·특수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 아이엠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 지역 수는 기업은행(9개), 농협은행(7개), 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국민·경남은행(3개), 아이엠뱅크(2개)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고,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음
 - 저축은행 중에서는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음(JT저축은행은 3개 지역, 한국투자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은 각각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음)

표 3-5 | 2024년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 결과

등급	일반은행		상호저축은행
	시중·특수은행	지방은행	
최우수	하나, 아이엠,기업,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JT
우수	신한, 우리, 국민	제주	한국투자, 오케이, 애뮤온
양호	-	-	JT친애, BNK, SBI
다소미흡	SC, 수협	-	예가람, 웰컴
미흡	씨티	-	OSB 페퍼, 대신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0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이러한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기준 현재 8곳(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도, 전북도, 경남도, 제주도)에서 해당 평가결과를 금고 지정 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위는 향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 갖는 상황임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제도 도입 배경 및 시행 경과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199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회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자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임
 - 이후 2007년 5월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는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동법 제38조는 자치단체장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개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금고를 지정하면서

불투명한 심사, 정치적 개입, 지역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음

-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 은행이나 지역 금융기관을 관행적으로 금고로 지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금융경쟁 왜곡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처음 제정된바, 금고 지정 방식(경쟁·수의), 평가항목(재무건전성, 금리조건, 주민편의성,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자율항목), 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뒤이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며 개정이 이뤄져 왔음

| 표 3-6 |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제도의 주요 연혁

시기	법령	주요 내용
1995년	「지방재정법」 개정	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간접적 근거 마련
2007년	「지방회계법」 제정	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직접적 근거 신설(제38조, 제39조)
2009년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최초 제정, 금고 지정 방식·평가항목·심의위원회 규정 마련
2014년	예규 개정	평가 배점 구체화,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강화, 협력사업비 산정 원칙 보완, 금고 약정 절차의 명확화, 협력사업비 집행·공개 절차 강화,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확대
2016년	예규 개정	협력사업비 직접 집행 금지 → 세입예산 편성·공시 의무화
2018년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금고 지정 시 고려사항(안정성 요건 등) 법제화
2019년	예규 개정	협력사업 항목 배점 축소(4점→2점)
2024년 4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안정성 기준 규정 체계 유지·정비
2024년 10월	예규 개정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방지 규정 신설, 평가 절차 세부화

□ 금고 지정 대상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해당하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될 수 있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동법의 규율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대출·외환 등 종합적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해당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같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수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성은 ①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일 것), ②충분한 자본금(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이며,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최근 3년간의 흑자 실적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
 - 다만, 현재까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선정된 사례는 없음
-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아울러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표 3-7】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2025년 1월 기준)

등급	자치단체 금고 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계	
시중 은행	국민	5	20	15	40
	아이엠	11	26	20	57
	기업	1	2	1	4
	농협	166	239	160	565
	신한	15	29	22	66
	우리	14	15	14	43
	하나	7	17	13	37
	계	219	348	245	812

등급		자치단체 금고 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계
지방은행	경남	2	20	17	39
	광주	6	15	22	43
	부산	15	9	11	35
	전북	1	13	12	26
	제주	0	2	1	3
	계	24	59	63	146
총계		243	407	308	958

출처: 지방재정365, '2025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 저자 재구성

□ 금고 지정 절차

-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절차는 크게 공고→제안서 제출→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약정 체결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지정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 공고: 자치단체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뒤, 참여 의향이 있는 금융기관에 평가 기준을 공고함
 -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은 재무 자료, 서비스 제공 계획,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함
 - 평가 및 심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평가함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으로 공개함
 - 약정 체결: 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통해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함
- 이때, 개별 자치단체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애초에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 후에도 여전히 당해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새로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또한, 수의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한편, 금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함

□ 평가항목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는 6개 평가항목(배점 포함)을 기본 틀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자치단체는 해당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당해 6개 평가항목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기타사항(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됨
 - 세부항목별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하여 각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수행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 표 3-8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항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 이때, 항목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항목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 항목6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목6의 배점(11점)을 항목1,2,3,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가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또한,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도 없음³⁾
 - 그럼에도,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를 2009년 예규 제정 당시부터 도입하였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 능력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항목5는 금융기관이 금고운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 주민·기업·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즉,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복지·문화·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금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3) 이처럼 항목5에 세부항목 추가나 점수 조정을 금지한 이유는 2019년 예규 개정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 간 지나친 금고 유치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도한 협력사업비 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때, 항목 5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는 2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실제 성과(실적)를 기준으로 평가됨
 - 대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복지·문화·교육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 지역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해당 실적의 규모·지속성·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실적이 아니라 금고 지정 이후 추진될 계획(출연·협력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당해 항목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계획)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책 목표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금융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능함
 - 다만,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기준으로 그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구성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단순히 부가적인 평가요소가 아니라,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독립적 항목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협력사업 항목은 사실상 금고 은행이 향후 자치단체와 함께 수행할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금고지정이 단순한 금융거래 관계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제3절

소결

1.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필요성 및 실효성 확보 방안

□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존재함
 - 해당 평가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함
 -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흡수한 자금이 다시 당해 지역사회로 환류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는 금융공급 부족과 성장 저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사회공헌(CRA) 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의 기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근거가 됨
 - 즉, 금융기관의 대출, 지역사업 참여, 취약계층·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이를 평가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임
 -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기여 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사례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단순한 사회공헌(CSR)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공공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확보한 예금·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지역경제에 환류시키는 것을 필수적 책무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여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을 가짐

- 이는 지역사회 기여를 ‘평가의 보조 항목’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공공적 기능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나타냄

□ 지역사회 기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제 정책결정(예: 금고 지정, 금융기관 감독 등)에 활용됨으로써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음
 - 미국의 CRA 평가결과는 금융기관의 전략적·제도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지정 심사에 실제 반영되고 있음
 - 이는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책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기능할 때 실질적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줌
- 이 밖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공급, 사업비 출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역 기업 생태계 유지, 서민 금융접근성 개선, 지역 내 경제활동 순환 촉진 등 광범위한 효과를 지님
 - 이러한 효과는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가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점

□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평가결과의 실효성 한계
 - 현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반영되고 있음
 -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는 ‘부정적 제재’보다는 ‘간접적 불이익’에

- 해당하는바, 평가결과가 ‘최우수’라 해서 명확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흡’ 평가를 받아도 치명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임
 - 또한, 평가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지역사회가 이를 금융회사 선택에 반영하는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는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
 - 이에 반해, 미국의 CRA 평가결과는 금융기관의 경영 전략과 직결되는 ‘실질적 규제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투자와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한 유인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금융기관이 CRA 평가에서 낮은 등급(Needs to Improve, Substantial Noncompliance)을 받은 경우, 합병이나 영업 확장 인가가 거부되거나 조건부 승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 반대로, 우수 등급(Outstanding, Satisfactory)을 유지하는 금융기관은 인가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업 확장과 전략 추진이 용이함
-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대한 적용 제약
- 당해 제도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 중 하나는 평가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이뤄지는 점으로서, 현재의 평가결과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직접 적용하거나, 금고 지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를 들어, 충청남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주시와 태안군 등 그 밑의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금융 환경과 수요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광역 단위 평균치로 평가한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힘들
 - 결국 당해 평가결과는 ‘참고자료’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고 지정이나 정책 의사결정의 구체적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의 괴리
-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시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가 활용되고

-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대상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도 포함됨
- 그러나 현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평가대상에는 상호금융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제도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상호금융을 제외한 채 은행만을 평가하는 것은 동일한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면서도 제도적 검증·평가의 부담이 특정 금융기관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평가를 중심으로)

○ 금융기관의 유형별 특성 미반영

-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지정 시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을 동일한 틀 속에서 평가하고 있음
- 이는 표면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에 가까움
- 시중은행은 전국적 네트워크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회공헌 자금(협력사업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은 그 기여에도 불구하고 규모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결국 동일한 배점 체계는 금융기관별 고유 기능과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활용 수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모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 및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는 항목6(기타사항)을 통해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재투자 평가 대상 지역에 13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곳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도, 전북도, 경남도, 제주도)만이 해당 평가결과를 금고 지정 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의 경우 개별 금고 지정 평가항목 가운데 항목6이 아닌 항목3(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통해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 대상 지역이 아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표 3-9]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항목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다.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18		22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4

항목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	라.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2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	7	탄소중립 기여도	1

주: 색이 진한 글씨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스스로 설정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해당함

출처: 각 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연계 가능성 문제
 - (평가항목 중복 문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항목이 서로 중복됨
 - 특히,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의 '인프라 투자' 부문과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은 모두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중심 지표(점포 수와 ATM 수 등)로 삼고 있음
 - 또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 '중소기업 지원' 부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몇몇 자치단체는 금고 지정 시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와 별도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는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 내에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도내 서민 대출실적 및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각각을 세부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음
 - 아울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의 '서민대출 지원' 부문 역시 자치단체

- 금고 지정 기준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항목과 그 평가 내용이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는데, 실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으로서 저신용자, 청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 이처럼 유사 내용을 두 제도 모두에서 평가할 경우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동일 활동이 이중으로 평가되는 불합리성이 발생함
 - (평가대상 간 형평성 문제) 현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지방회계법」제38조에 의해 이들 금융기관도 일정한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면 자치단체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지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괴리 속에서 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애초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그 결과, 상호금융기관은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금고 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지정 제도 운영상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
 - 즉, 이는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기여 수준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함

제 4 장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제1절 평가지표 개발 방식

제2절 후보 평가지표 선정

제3절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제4절 소결: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정립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제1절

평가지표 개발 방식

1. 지표 개발 목적 및 방향 설정

□ 지표 개발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

-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지역 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가계의 주거·교육·창업 자금 지원, 공공 인프라 형성,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임
- 최근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비수도권 실물경제에 비해 부족한 금융지원 등은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음
 - 첫째,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그 수준을 세밀하게 측정·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둘째,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자치단체 금고 지정 자격을 지닌 상호금융기관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이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셋째, ESG 및 CSR 경영의 보편화 속에서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략을 핵심 가치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마련이 요구됨

□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 포괄성과 형평성 확보

- 평가지표는 특정 금융기관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업권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정 유형의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적 실효성 강화

- 개발되는 지표는 단순히 평가 목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나아가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략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성과 미래 지향성 반영

- 단기적 성과 측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즉, 인구 고령화, 지역소멸 위험, 디지털 금융 확산, 기후위기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 설계가 요구됨

○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확보

- 개발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모든 지역 단위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개념 정립

□ 지역사회 기여도의 의의 및 접근 방식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과 이익을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얼마나 환류시키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약속(social contract)의 성격을 가짐
- 이때, 해당 기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그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할 수 있겠음
 - 경제적 기여 중심 접근: 지역 내 자금 환류, 대출·투자 확대 등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
 - 사회적 가치 중심 접근: 금융소외 계층 지원,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신뢰 구축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
 - 제도적 책무 중심 접근: 금융기관이 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여 지역 차별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 이 세 가지 접근을 종합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제도적 책무가 균형을 이루는 다층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지역사회 기여도의 핵심 속성 및 개념 확장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정의할 때 주목해야 할 속성은 다음과 같음
 - 상호성(reciprocity): 지역주민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은 되도록 해당 지역에 환원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순환적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책무성(accountability): 금융기관은 단순 영리 목적을 넘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지는바, 이는 공기업적 속성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CSR)에도 맞닿음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일회성 후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와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함
 - 가시성(visibility):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며, 단순 수치가 아닌 생활 수준 및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함

- 기존에는 지역사회 기여를 흔히 협력사업비 출연,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 후원과 같은 비재무적 활동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기후위기 대응, 지역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이 등장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의 의미도 확대되고 있음
 - 예컨대, 금융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오히려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접근성 강화 노력 역시 지역사회 기여 가운데 하나로 고려됨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도의 정의

- 앞선 논의를 통할 때,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창출한 자금과 이익을 다시 해당 지역으로 환류시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함
- 이러한 정의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단순한 재무적 수치나 일회성 기부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바, 금융기관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가치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기여도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제도적 책무가 결합된 다차원적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당해 기관의 경영전략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활동이 실제로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지표 개발 절차

□ 다층적 과정으로서의 평가지표 개발 절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은 단순한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객관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실질적 정책 활용성을 담보해야 하는 다층적 과정에 해당함
 - 단순히 이론적 적합성을 갖춘 지표라 하더라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며, 반대로 실무적으로 편리하기만 하고 학문적·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된 지표는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표 개발은 다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객관성·투명성·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이라는 제도적 맥락에 적용될 평가지표는 행정 현장성, 금융기관 수용성, 주민 체감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문헌 검토를 넘어, 자치단체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 검증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평가지표의 개발 절차를 ① 기존 평가지표의 검토 및 후보 지표 선정, ② 후보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③ 평가지표 체계 정립의 3단계로 나누고자 함
 -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실효성과 수용성을 겸비한 최종 지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3단계 과정

- 1단계: 기존 지표의 검토 및 후보 지표 선정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상의 주요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자 함
 - 이때, 금융기관의 재무적 기여뿐만 아니라 금융포용 등 다양한 차원의 비재무적 차원을 폭넓게 고려하여 후보 지표군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국내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및 지침)와 세부 평가기준, 은행연합회의 공시 내용, 개별 금융기관의 공시 항목 및 내부 관리자료, 미국의 CRA 평가지표,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 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특히,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각 후보 지표에 대해 타당성(지역사회 기여를 제대로 반영하는가?)과 검증가능성(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가?)을 기준으로 평가를 요청할 것임
 - 아울러, 선정된 후보 지표는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유형별 분류 작업을 통해 체계화할 계획임
 - 예컨대, 경제적 기여(지역 내 자금 환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공헌(장학사업,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체육 후원 등), 금융포용(고령층·저소득층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 교육 제공 등), 지속가능성 및 ESG(친환경 인프라 투자,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치 등)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평가지표의 중복을 줄이고, 각 항목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단계: 후보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별 후보 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각 유형에 속한 세부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고, 이어서 개별 지표가 속한 유형(대분류) 간의 상대적 비중을 확정할 것임
 - 이를 통해 지표 전체의 균형성과 우선순위를 체계적·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 또는 지표에 과도한 배점이 집중되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상대적 중요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 세부 평가지표는 최종 평가지표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지표의 구성 타당성 및 설명력을 제고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임

- 그 산정에는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는바, 해당 기법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과 피드백을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임
- 당해 과정을 통해 산출된 중요도는 단순한 수치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평가지표 전반의 구조적 균형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함
 - 즉, 개별 평가지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수치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배점의 합리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
 - 중요도가 높은 것은 해당 영역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적·핵심적인 지표로 간주되어 높은 배점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평가결과에 있어 금융기관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준거로 기능하게 됨
 -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지표는 생략되거나 낮은 배점을 부여받게 될 것이지만, 특정 금융기관의 특수한 성과를 부각하거나 평가 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지표별 중요도는 단순히 배점 산정의 근거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급고 지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정책적 준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됨

○ 3단계: 평가지표 체계 정립

- 델파이 조사 결과를 직접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각 항목별·지표별 배점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함
- 이는 단순히 점수를 배분하는 절차를 넘어, 전체 평가지표 체계를 실질적 평가 도구로 완성하는 과정임
-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 산출된 중요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표 구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체 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표 유형별로 일정한 비율의 점수를 우선 배분한 뒤, 각 유형 내에서 세부 지표별 배점을 중요도 가중치에 따라 세분화할 것임(정규화 절차 등을 통해 일관성 확보)
- 아울러 금융기관 유형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 유형에 맞는 평가지표 체계를 설정함

-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대규모 자산과 광범위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점포망 확충이나 ATM 설치 등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니는 반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자산 규모 등 영업 기반이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지점 수와 현금자동화기기 설치 규모에서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표와 동일한 배점을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 유형별 특성과 역할이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될 위험이 존재함
- 즉, 금융기관 유형별로 서로 다른 평가지표와 배점의 적용이 요구됨

[그림 4-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3단계 과정

과정	주요 활동	산출물
1단계 ▽	기존 지표의 검토 및 후보 지표 선정	후보 지표
2단계 ▽	후보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을 위한 반복 설문조사	지표별 가중치 및 최종 지표
3단계	평가지표 체계 정립	배점 포함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제2절

후보 평가지표 선정

1. 기존 지표의 검토

□ 검토 개요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평가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이는 새로운 지표를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적합성과 실무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사례로는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기준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로는 미국 CRA의 평가 항목·기준과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 등을 살펴보았음
 -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제도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 평가틀로서, 본 연구의 평가지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준거가 됨
-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평가체계만으로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표 설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행연합회의 공시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였음
 - 해당 자료들은 단순히 지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되는 보조적 자료에 그치지 않고, 개별 항목이 직접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제공함

□ 금융위 ‘지역채투자 평가제도’에서의 평가항목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채투자 평가제도’에서는 2024년 평가를 기준으로 총 5개의 평가부문(정량적 부문 4개, 정성적 부문 1개)을 설정하고 있음
- 평가부문1: 지역자금 역외 유출
 - 해당 부문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역내 환류를 유인·제고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총 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표 4-1】 '지역자금 역외 유출'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식	단위	평가대상
① 지역별 예대율	해당지역 총 여신액 / 해당지역 총 수신액	%	-일반은행 -저축은행
▶ (가점) 전년 대비 개선수준	금년도 지역별 예대율 - 전년도 지역별 예대율	%p	
② 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	(해당지역 총 여신액/전국 총 여신액) - (해당지역 GRDP/전체 GRDP)	%p	-일반은행 -저축은행
②-1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과리율	(해당지역 총 기업여신액/전국 총 기업여신액) - (해당지역 GRDP/전체 GRDP)	%p	-일반은행
③ 지역 여신 증가율	(금년도 해당지역 총 여신액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여신액)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여신액	%	-일반은행 -저축은행

주: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부문2: 중소기업 지원

- 해당 부문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유인·제고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총 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다만,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실적'을 별도 집계하여 평가할 계획에 있음

【표 4-2】 '중소기업 지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식	단위	평가대상
① 지역별 중기대출 비중	해당지역 중소기업 대출액 / 해당지역 총 기업 대출액	%	
▶ (가점)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	(금년도 해당지역 총 중소기업대출 차주수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중소기업대출 차주수) / 전년도 해당지역 중소기업대출 차주수	%	
▶ (가점)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실적	해당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액 / 해당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여신액	%	-일반은행 -저축은행
② 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과리율	(평가기간 중 해당지역 중소기업 대출액/전국 총 여신액) - (해당지역 중소기업 매출액/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p	
③ 지역 중기대출 증가율	(금년도 해당지역 총 중기대출액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중기대출액)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중기대출액	%	

주: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부문3: 서민대출 지원

- 해당 부문은 지역 내 서민에 대한 대출 취급을 유인·제고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총 2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이때, 무엇이 서민대출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은행 유형별로 상이함
 - 일반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의 경우 연간 ‘새희망홀씨대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에 해당함
 - 다만, 2025년부터는 일반은행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외에 은행 재원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로까지 서민대출 상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음
 -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대출로서 ‘연간 사잇돌Ⅱ대출’과 ‘무보증 자체중금리 대출’이 이에 속함

| 표 4-3 | ‘서민대출 지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식	단위	평가대상
① 지역별 서민대출 비중	해당지역 서민대출 취급액 / 해당 지역 가계대출액	%	-일반은행 -저축은행
▶ (가점)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	(금년도 해당지역 총 서민대출 차주수 - 전년도 해당지역 총 서민대출 차주수) / 전년도 해당지역 서민대출 차주수	%	
② 지역별 서민대출 증가율	(금년도 해당지역 서민대출 취급액-전년도 해당지역 서민대출 취급액) / 전년도 해당지역 서민대출 취급액	%	

주: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부문4: 인프라 투자

- 해당 부문은 지역 내 금융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 등을 유인·도모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총 2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이때, ‘점포’는 지역별 지점, 출장소 등을 포함하며, ‘자동화기기’는 CD, ATM, 기타 스마트 키오스크 등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공동 ATM은 자행 ATM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에만 해당 기관 ATM으로 인정)를 의미함

- 한편, 당해 부문에 대한 평가는 일반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대상으로만 함
 - 일반은행은 자산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점포 확충·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적 높음
 -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한정적인 수익 기반(서민금융 중심)과 낮은 자본 시장 접근성(자금조달 한계)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약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인프라 투자’ 평가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표 4-4 | ‘인프라 투자’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식	단위	평가대상
① 인구 천명당 점포 수	해당지역 점포 수/(해당지역 인구수/1000)	개	-일반은행
▶ (가점) 점포 신설	금년도 해당지역 점포 수 - 전년도 해당지역 점포 수	개	
▶ (감점) 점포 폐쇄	금년도 해당지역 점포 수 - 전년도 해당지역 점포 수	개	
▶ (감점) 점포 폐쇄 사전통지 등 미실시	점포 폐쇄시 사전통지 및 사전영향평가 미실시 내역		
▶ (가점) 우체국 창구 제휴	우체국과의 창구 업무 제휴 여부		
② 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해당지역 자동화기기 수 /(해당 지역 인구수/1천명)	개	
▶ 자동화기기 신설	금년도 해당지역 자동화기기 수 - 전년도 해당지역 자동화기기 수	개	
▶ 우체국 자동화기기 제휴	우체국과의 자동화기기 제휴 여부	-	

주: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평가부문5: 지역금융 지원전략

- 해당 부문은 금융기관의 지역 밀착형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총 5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짐

- 이때, 평가대상 금융기관은 평가항목별로 중점 평가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지역마다 은행은 5page, 저축은행은 3page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인원·금액·횟수 등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 요구됨

표 4-5 | '지역금융 지원전략'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식	평가대상
① 해당지역 경제기여도	1. 해당지역 출연금, 지역기금 출연금 2. 해당지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 사업수행내용 3. 해당지역 인재 채용 내역 4. 해당지역 관련 행사·교육 시행 내역 5. 해당지역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시행 내역 (예: 사회공헌활동)	-일반은행 -저축은행
② 지역기업·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금융환경 기여도	1. 해당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2. 해당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3. 해당지역 기업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시행 내역	
③ 지역 서민금융 환경 기여도	1. 해당지역 서민형 금융상품 취급 현황 2. 해당지역 서민 대상 행사·교육 시행 내역 3. 해당지역 서민 관련 특별 프로그램 시행 내역 (예: 위기지역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한도 확대 등)	
④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 해당지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2.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3. 해당지역 자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4. 해당지역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기타 지원활동	
⑤ 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1. 기관 차원의 지방지역 금융지원 전략 마련 여부 2. 기관 차원의 지방지역 관리 체계 및 그 내용	

주: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기준

- '지역사회 대한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항목의 평가 기준
 -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지역사회 대한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배점 7점)을 하나의 평가항목(항목5)으로 정하고 있음

- 이때, 모든 자치단체에서 해당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배점 5점)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배점 2점)으로 구성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을 ‘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계획’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6 | 수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자기자본이익율(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3. 시민이용 편의성	소계	22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2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기타사항	소계	2
	가.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여부	1
	나. 탈석탄금융 이행실적	1

- 또한, 개별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이들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식은 대부분의 자치단체 간에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순위에 따라 배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현금출연 규모)을 비교·평가한 후 그 순위에 따라 배점 하게끔 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과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작동함

[그림 4-2]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 밀봉 후 인감날인 별도 제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 금고 출연금	비 고	
계			
2028년			
2027년			
2026년			
2025년			

① 향후 4년간(25~29년) 경기도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금액을 제시하되 금액 표시는 명확히(이내, 정도, 약 등의 용어 금지)기재하여야 함
 ※ 현금 출연만 인정하며 전액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됨
 ※ 전산개발 투자비용 등과 같은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 제외됨
 ②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총액을 기재하되 총액을 균등 배분 함을 원칙으로 함
 ③ 출연금액은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도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④ 도 금고 신청 금융기관은 출연금 납부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대한 공통적인 세부 평가 기준 및 방식
 - 그나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식은 자치단체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식이 상세하게 담긴 내부 자료 일체(조례 및 규칙 외의 것으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또는 안내서 등)를 요청하였음
 - 결과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의 총 124개 자치단체(광역 본청 및 기초)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냄
 - 첫째, 기여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정량지표(금액 또는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함
 -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독자적으로 해당 기관·단체·개인에게 제공한 최근 3~4년 이내의 각종 지원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당해 지원의 범위는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향상, 장학금지원, 관광사업, 지역 환경보전, 문화유산 발굴, 수해복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 또한, 금고업무, 대출 실적, 시·군 협력사업비(출연금) 등은 그 실적에서 제외하고, 농협·수협 은행의 경우 지역조합 실적을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즉, 분야별로 기여 실적(현물 및 현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하게끔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들 금액을 합산한 ‘기여금 총액’과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별 순위를 매기는 실정임
 - 다만, 몇몇 자치단체(인천광역시 중구, 부평구 등)에서는 기여 실적의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하고 있음(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의 배점 5점 가운데 3점은 기여금 총액에, 나머지 2점은 기여 실적 내용 등에 배정하는 방식)

| 그림 4-3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1) 도내 대민지원 분야 지역사회 기여

【소 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 고
계			
2024. 9. 30.			
2023년			
2022년			
2021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일자	분야별	지원 금액	수혜자	지원내용
계					
2024. 9. 30					
2023년					
2022년					
2021년					

① 도내의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향상과 장학금지원, 관광사업, 지역 환경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및 수해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한 현금, 현물 등에 대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되,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정도, 약 등의 용어 금지**)
 ② 다른 항목(중소기업 지원실적 등)과 중복 될 수 없음
 ③ 지원 실적 세부내역은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없는 경우 평가에 미반영 함**)
 ④ 농협은행의 경우 지역농협 실적 제외

- 둘째, 순위별 배점 방식(상대평가)을 택하고 있음
 - 기여금 규모 등에 따라 순위별 배점(예: 1~5순위, 순위별 0.25점 혹은 5% 비율의 점수 차등)을 주는 상대평가 체계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사용됨
 - 다만, 일부 자치단체(성남시, 김포시 등)의 경우 순위에 따라 배점하지 않고, 기준에 설정해 놓은 금액 구간별로 배점을 주는 절대·구간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림 4-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배점 방식 사례

□ 배점안
◇ 배점 방법 결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점수편차
지역사회 기여실적	5.0	4.75	4.50	4.25	0.25
협력사업 출연계획	2.0	1.90	1.80	1.70	0.1

- 은행별 순위간 배점편차는 점수배점의 5% 비율 적용
- 최고 기여실적 금융기관 만점(5점)
- 협력사업 출연계획(출연금) 많은 금융기관 만점(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대한 **차별적인** 세부 평가 기준 및 방식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의 차별화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본청)은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선언 여부,⁴⁾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금융지주 포함),⁵⁾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⁶⁾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유성구도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두고 있으며, 탈석탄 선언 여부와 친환경에너지 투자 실적(SPC 참여 횟수)을 그 평가기준으로 정함
 - 또한, 경남도(본청)는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과 ‘탄소중립 선언 및 저탄소·그린금융상품 개발’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최근 3년간의 태양·풍력·지열 등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과 그린뉴딜 펀드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운영 등의 추진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탄소중립 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가 선언식, 기자회견 등 공개적·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언하였거나 정관에 반영한 경우에 인정됨
5)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에는 TCFD, CDP, UNEP FI, PCAF, 적도원칙, SBTi, Net Zero Banking Alliance, GFANZ 이니셔티브 등이 해당함
6)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현황으로서 SPC 투자 횟수와 해당 총사업비 및 FI 투자금액을 주요 산정기준으로 함

- 이 밖에, 충남도 홍성군에서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와 석탄금융 투자 여부를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4-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에 대한 기후·환경 요소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2) 기후변화 대응 실적

○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선언 여부	선언일	비 고

주) 1. 탄소중립 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가 선언식, 기자회견 등 공개적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언하였거나 정관에 반영한 경우 인정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2024. 6. 30. 현재)

연번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 입 일	비 고
계	총 ○개		

주) 1. 기후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기재(금융지주 포함)
2.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범위 : TCFD, CDP, UNEP FI, PCAF, 적도원칙, SBTi, Net Zero Banking Alliance, GFANZ 이니셔티브 등
3. 증빙자료 첨부

○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현황 (SPC 투자 횟수)	비 고 (출사업비/PI 투자금액)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말		

주)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함
2. 2021. 1. 1.~ 2024. 6. 3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한 횟수 기재(국내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3. 농림은행이나 수협 등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

○ 다른 평가항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수준 평가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항목5) 외의 평가항목을 통해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이들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항목3) 혹은 '기타 사항'(항목6) 평가 항목 내 별도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실적·계획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항목3) 내에 해당 세부항목을 설정한 자치단체로는 경기도(본청), 충북도(본청), 광주광역시(본청), 대전광역시(본청), 인천광역시 본청·동구, 부산광역시 중구·서구·영도구·북구·강서구·사상구 등이 존재함7)
- ‘기타 사항’(항목3) 내에 당해 세부항목을 설정한 자치단체에는 경남도(본청), 부산광역시 본청·남구·해운대구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대출 실적’은 대출 건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3~4년 내 이루어질 대출 건수와 금액, 이에 대한 대출평균금리, 상환조건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음

|그림 4-6| 관내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실적·계획 수준에 관한 평가자료 작성 양식 사례

라.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1) 최근 4년간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지원기업수	비 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주 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국내지역별 여신현황(22127))의 중소기업 대출금(C1112)을 기재하되, 도 소재 정보 실적에 한함
2)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제출 보고서 등) 첨부

(2) 향후 4년간 도내 중소기업 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 원 액	지 원 기 업 수	기 업 당 지원한도	상 환 조 건	대 이 자 율	비 고
총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주 1)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 및 확대 방안 등 계획 제출
2) 도 소재 정보에서 예정하는 대출금 기준임
3) 대출계획서 제출 시 **이행확약서** 첨부
4) 차기 등급 지정 시 대출실적과 비교하여 평가 예정

- 또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항목3) 등의 평가항목 내 별도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관내 서민 혹은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실적 또는 계획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7) 광주광역시 본청, 인천광역시 본청·동구 등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실적 등을 대등하게 합산하여 평가함

- 충북도(본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이 이에 속함
- 일반적으로 ‘대출 실적’은 대출 건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3~4년 내 이루어질 대출 건수와 금액, 이에 대한 대출평균금리, 한도액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음

그림 4-7 | 관내 서민 및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실적·계획 수준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사례

라. 관내 소상공인 및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2점)

1) 관내 소상공인 및 서민대출 지원 실적(1점) ⇒ 순위별 평가

가) 개요

○ 관내 소상공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실적 비교·평가

나) 평가기준

○ 2022. 1. 1. ~ 2025. 2. 28 기간중 관내 소상공인의 소액대출 및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실적

다) 태점표

배 점	대출금액(백만원)	순위	점수	비 고
○○은행				
○○은행				

2) 관내 소상공인 및 서민대출 지원 계획 실적(1점) ⇒ 순위별 평가

가) 개요

○ 관내 소상공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계획 비교·평가

나) 평가기준

○ 관내 소상공인의 소액대출 및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 계획

다) 태점(안)

배점	소상공인(0.5)		저신용자·저소득층(0.5)		평가(원차)	비고
	대출한도액/이자율 대금(만원)(0.02%~0.01%)	이자율 배점	대출한도액/이자율 대금(만원)(0.02%~0.01%)	이자율 배점		
배 점	0.35		0.35		순위별	배점
기	0.315		0.315		1	
준	0.28		0.28		2	
	0.245		0.245		3	
					4	

※ 대출한도액이 같을수록, 이자율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이 주어지고 합산배점으로 순위별 배점이 매겨짐.

마) 태점표

배 점	대출한도액/이자율 배점합계	순위	점수	비 고
○○은행				
○○은행				

- 이 밖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광역자치단체(본청)의 경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항목3) 또는 ‘기타 사항’(항목6) 평가항목 내 별도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항목3) 내에 해당 세부항목을 설정한 자치단체로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가 존재함
- ‘기타 사항’(항목6) 내에 당해 세부항목을 설정한 자치단체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 제주도가 속함
- 다만, 지역재투자 평가는 시·도 지역을 단위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의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기타 사항’(항목6) 내의 세부항목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림 4-8 |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사례

6. 기타사항(7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7점)

- 평가기준
 -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 ▷ 최근 4년(21.~'24.7.31) 및 향후 4년(25.~'28년)간 관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에 대출한 실적과 계획을 비교·확인하여 평가
- 평가방식 : 순위별로 평가, 순위간 편차는 10%

(1) 지역재투자 평가결과(1점)

구 분	1순위	2순위	비 고
배 점	1.0점	0.9점	

구 분	등 급	평 점	비 고
		1.0	금융위원회
		0.9	공시자료

□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공시 내용

- 개별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주요 공시 내용
 - 「은행법」 제43조의3과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및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반은행(시중·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요 경영정보 및 금융 거래조건을 공시해야 함

- 또한,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홈페이지 및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이러한 공시 내용은 경영 및 재무 현황, 소비자보호,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 경영, 기타 사항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 가능함
- 범주1: 경영 및 재무 현황
 - 자산·부채·자본 등 주요 재무지표를 비롯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대손충당금비율, 순이자마진(NIM) 등이 공개됨
 - 이들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내용임
- 범주2: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
 - 고객 민원건수, 소비자보호조직 구성현황, 금융소비자보호인증 획득여부, 금융교육 및 상담 실적, 금융사고 발생현황 등이 공개됨
 - 이러한 내용들은 은행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수준과 민원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됨
- 범주3: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내용
 -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사회공헌 활동 내역, ESG경영 추진현황, 지역사회 협력사업 사례 등이 공개됨
 - 특히 은행연합회의 연도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요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총괄 및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총괄 현황 내용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계 조성, 사회책임금융 확대, 기회 제공 및 문화가치 확산, 금융교육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 내용과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 은행협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상의 총괄 현황 공시 내용

테마	토픽	지원 목적 및 내용	실적 측정방식
사회 생태계 조성	사회혁신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가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성장에 투자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데 기여함	지원금액 및 수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 악화 극복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컨설팅 등 제공함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지원	저소득,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계층별 취업 멘토링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멘토링 참가자 및 취업자수
	지역사회 상생활동	소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및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를 도모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사회책임금융 확대	소외계층 금융 부담 완화	다양한 대출상품 및 맞춤형 금융상품을 통해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도모함	지원 금액 및 건수
	소외계층 대상 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글로벌 지역사회 발전 지원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 전쟁, 가난 등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후원하며 글로벌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	지원 금액 및 건수
	저출생 위기 극복 활동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지역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기회 제공 및 문화가치 확산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정보 및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 및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아동 돌봄·배움 서비스 지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도서관, 공부방 등 사회적 인프라 설립과 양질의 돌봄·배움 서비스를 제공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비인기 스포츠 및 예체능 분야 지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예체능 유소년 선수가 유망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원 금액 및 종목수

테마	토픽	지원 목적 및 내용	실적 측정방식
	메세나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금융교육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청소년 및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확립을 돕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함	교육횟수 및 수혜인원
	금융권 장학 멘토링	진로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은 물론 학습기기와 학습 공간 등을 지원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장애인 및 시니어 고객 지원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및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다문화 및 외국인 고객 지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활동을 진행함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환경위기 리스크 분산을 위한 금융상품과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이 결합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함	운영금액 및 진행건수
	친환경 시설 투자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 숲 및 공원 조성, 은행 내부의 친환경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함	투자금액 및 진행건수
	기후변화 재해 복구 지원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함	지원 금액 및 건수
	기후변화 행동 선언 및 친환경 캠페인	기후행동 선언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협력 대응하며, 환경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직접 진행하고 후원함	지원금액 및 참여인원

출처: 은행연합회(2025).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또한, 금융기관별 현황 내용을 통해서는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문화·예술·체육), 환경, 글로벌, 기타(추가활동) 등으로 구성된 각 활동분야와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음

[표 4-8] 은행협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상의 금융기관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공시 항목

활동 분야	항목
서민금융	서민금융 사업 지원: 휴면예금·수표 출연
	서민금융 사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미소금융재단 특별출연 등
	신용회복 사업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예산지원
	신용회복 사업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기부 등
	기타 지원
지역사회·공익	재해 구호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익 행사 및 캠페인 개최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등 공익 홍보
	소상공인 등 지원(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기타 지원	
학술·교육	학술·교육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서관 등 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기타 지원
메세나(문화·예술·체육)	공연, 전시회, 예술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 지원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및 팀(선수) 지원
환경	환경보호 사업 지원
	환경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지원
글로벌	해외 재난 구호 및 빈민 지원
	기타 지원
기타(추가활동)	자치단체 출연금, 병원 출연금, 대학교 발전기금/출연금, 공공기관 출연금, 기타기관(비영리법인 등) 출연금,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 민생 금융 지원(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등

출처: 은행연합회(2025).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항목4: 기타 사항

- 은행의 조직과 영업활동 전반을 보여주는 지점 수, 직원 수, 지배구조, 주주구성, 수익배분 현황, 지역별 영업망 현황 등이 공개됨
- 당해 내용들은 은행의 조직 규모와 운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경영 효율성과 지역금융 네트워크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판단이 가능한 주요 공시 내용 정리

- 지역사회 분야별 공헌 규모 및 실행수준

- 은행연합회 및 은행별 공시자료에는 각 은행의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공헌 수준을 지원액,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봉사시간, 수혜인원 등과 같은 정량지표로 나타내고 있음
- 이들 내용은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입한 재정적·인적 자원 규모와 실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줌
- 특히, 총량 수준의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단체·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공동사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 및 지역 밀착형·특화형 활동 수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포용금융 및 취약계층 지원 실적

- 해당 공시자료를 통해 서민금융상품 수 및 취급 실적, 저신용자 혹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은행이 지역 내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또한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 지원, 긴급생계자금 대출 사례 등을 서술하고 있어, 그에 관한 질적 내용도 확인 가능함

- 금융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실적

- 해당 공시자료에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이 지역주민의 금융이해력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청소년,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세부 대상별로도 구분하여 지원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여도
 - 해당 공시자료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고용규모, 본점·지점 간 인력 구성 현황 등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은행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음
 - 일부 은행은 장애인 고용 수준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어 고용 다양성에 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민이용 편의성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 당해 공시자료에는 지점 수, 출장소 수, ATM 설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역별 인구규모나 고령인구 비중과 결합할 경우 금융서비스 접근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은행은 무인점포,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확대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창업 지원
 - 해당 공시자료에는 장학금 지원금액, 청년창업자금 규모,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은행이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와 지역 청년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 일부 은행의 경우 지역대학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멘토링 사례 등을 함께 공시하고 있음
- 환경·기후 대응 관련 활동
 - 해당 공시자료를 통해 각 은행의 친환경 금융상품 공급규모, ESG 투자금액, 환경캠페인 참여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들은 은행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겠음

□ 미국 CRA의 평가 항목 및 기준

- 미국 CRA의 최종 개정규정(Interagency Final Rule)에서는 은행들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에 관한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2023년 10월 미국의 주요 은행 감독기관인 FRB, FDIC, OCC 세 곳이 공동으로 CRA의 최종 개정규정을 발표하였음
 - 해당 개정규정은 은행이 지역사회에 신용·금융서비스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test)과 지표(metric)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 구체적으로, 개정규정은 평가대상 지역(Assessment Area)을 세분화하고, 은행이 물리적으로 점포를 두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을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된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이와 함께, ‘성과맥락(Performance Context)’ 개념을 강화하여, 동일한 대출 실적이라도 해당 대출 지역의 인구·경제·사회여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기여도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하였음
 - 결과적으로, 개정규정은 CRA의 핵심 목적, 즉 “은행이 자신이 영업하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특히 저·중소득(Low- and Moderate-Income, LMI) 지역—에게 공정하고 충분한 신용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틀을 현대 금융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대출금액이나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cooperation)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이때, 은행 유형은 자산 규모와 영업유형에 따라 대형은행(large bank), 중형은행(intermediate bank), 소형은행(small bank), 특수목적은행(limited purpose or wholesale bank), 전략계획형 은행(strategic plan bank) 5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적용 평가항목을 달리하고 있음
 - 대형은행 기준: 자산규모가 20억 달러(USD 2 billion) 이상인 예금취급은행(depository institution)

- 중형은행 기준: 자산규모 6억~20억 달러(USD 600 million~2 billion)인 은행
 - 소형은행 기준: 자산규모 6억 달러(USD 600 million) 미만인 은행
 - 특수목적은행: 리테일 상품은 거의 없고 도매금융·투자에 주력하는 기관
 - 전략계획형 은행: 자체 5년 계획 (Strategic Plan)을 제출하고 감독기관 승인을 받은 은행
- 평가항목으로는 ‘소매대출(Retail Lending Test)’, ‘소매금융서비스·상품(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 ‘지역사회개발 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 ‘지역사회개발 서비스(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 등 총 네 가지가 존재하며, 항목별로 정량지표(quantitative metrics)와 정성평가(qualitative assessment) 요소를 함께 두고 있음
- 특히, 정성평가 요소로는 지역수요대응성(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veness) 등이 존재함
 - 지역수요대응성: 은행이 제공한 대출·투자·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실제 필요(local credit and community needs)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평가함
 - 영향력: 은행의 대출이나 투자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효과(impact)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함
 - 혁신성: 은행이 기존 관행이나 틀을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상품·제도·협력모델을 도입했는가를 평가함
 - 즉, 정성평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대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고, 의미 있게 했는가’를 판단하며, 정량평가 이후 최종 등급을 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당해 네 가지 평가항목과 항목별 정량지표 및 정성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대출 평가(Retail Lending Test)
 - (목적) 지역기반 대출평가로서, 은행이 지역 내 저·중소득(LMI)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구, 그리고 중소기업(small businesses) 및 소규모 농가(small farms) 등의 신용(대출)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평가함

- (평가방식) 먼저 대출 총량을 측정(예컨대, 해당 지역에서 은행이 취급한 소매대출 총액을 예금잔액과 비교하여, 당해 은행이 지역 내 신용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함)하고, 이어서 대출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저·중소득지역에 대한 대출 집중도가 충분한지를 평가하며, 동시에 차주 분포를 분석하여 대출이 저·중소득 개인·가구 및 소규모 사업체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정량 및 정성 평가 병행,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결과를 보완·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
- (평가대상)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간소화된 평가 진행)

[표 4-9] '소매대출 평가(Retail Lending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내용	비교기준
대출 총량비율 (Bank Volume Metric)	평가구역 소매대출 총액 / 예금총액	은행이 얼마나 많이 대출했는가를 검토 → 활동성 측정	동종기관 평균값(Market Volume Benchmark)
지리적 분포지표 (Geographic Distribution Metric)	저·중소득 지역 대출 수 / 해당 구역 전체 대출 수	은행이 어디에 대출했는가를 검토 → 형평성·포용성 측정	동종기관 평균값(Market Benchmarks) 및 지역사회 기준치 (Community Benchmarks)
차주 분포지표 (Borrower Distribution Metric)	저·중소득 차주 또는 중소기업체 (Small business revenues ≤ \$1 million) 대출 수 / 전체 대출 수	은행이 누구에게 대출했는가를 검토 → 형평성·포용성 측정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표 4-10] '소매대출 평가(Retail Lending Test)'의 정성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내용
지역수요대응 (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실제 신용수요를 반영했는가를 검토 • 지역산업·인구·소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 제공 등
영향력(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검토 • 고용창출,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 성과 등
혁신성(Innova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검토 • 신용평가 개선, 디지털 접근성 확대, 협력모델 구축 등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 소매금융서비스·상품 제공 평가(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
 - (목적) 지역 내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ibility)과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은행이 저·중소득(LMI) 지역 및 취약계층에게 은행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구축했는가를 살펴봄. 즉, 단순히 지점 수나 상품 종류를 넘어, 누가 접근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지역의 금융소외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함
 - (평가방식) 금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는 저·중소득 지역 내 영업점 비율, ATM·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과 영업시간·언어지원·편의시설 등 취약계층 친화적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상품의 포용성 측면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체와 같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예: 수수료가 낮은 예금계좌, 소액신용 대출상품 등)의 제공 여부와 그 실질적 이용성과를 평가함(정량 및 정성 평가 병행, 정성평가 비중이 약 절반 이상을 차지)
 - (평가대상)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선택적 적용)

【 표 4-11 】 ‘소매금융서비스·상품 제공 평가(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내용	비교기준
지점 분포비율 (Branch Distribution Metric)	저·중소득 지역 내 지점 수 / 해당 구역 전체 지점 수	은행이 저·중소득 지역에 물리적 영업기반(지점)을 충분히 두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접근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측정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대안채널 활용비율 (Alternative Delivery Systems Metric)	ATM·모바일·인터넷·금융 교육센터 등 대안적 채널 수 / 전체 서비스 채널 수	비대면 및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평가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및 지역 사회기준치 (Community Benchmarks)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내용	비교기준
취약계층 친화운영비용 (Inclusive Service Availability Metric)	저·중소득 지역 내 취약계층 친화지점 수 / 전체 지점 수 (장애인 접근, 다언어 서비스 등 제공 여부 포함)	영업시간·언어 서비스·편의시설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평가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및 감독기관 가이드라인
포용금융상품 제공비용 (Inclusive Product Offerings Metric)	저·중소득 고객 및 중소기업 대상 포용적 금융상품 수 / 전체 상품 수	금융상품이 저·중소득층,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수준을 평가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및 지역사회 기준치 (Community Benchmarks)
포용상품 이용률 (Inclusive Product Utilization Rate)	포용금융상품 이용 고객 수 / 전체 고객 수	제공된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으며 금융소외 완화에 기여했는지를 평가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및 기관 자체 목표치 (Internal Targets)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표 4-12 | '소매금융서비스·상품 제공 평가(Retail Services and Products Test)'의 정성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내용
지역수요대응 (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금융환경·소득수준·산업구조 등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검토 저·중소득 지역 주민이나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지점 운영, 상품 설계, 대안채널 구축 여부 등
영향력(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서비스 및 상품이 지역사회의 금융포용성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검토 금융교육, 신용회복 지원, 지역 내 계좌보유율 제고 등 지역 금융 접근성 개선 성과
혁신성(Innova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기술·방식·협력모델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향상시켰는지를 검토 모바일·디지털 채널 활용, 저비용·저수수료 금융상품, 사회적 금융 (community finance) 등 혁신적 접근의 도입 여부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 지역사회개발 금융 평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

- (목적) 은행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communitry development)을 위해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급했는지를 평가하는바, 특히 저·중소득 (LMI) 지역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 및 인프라 개발 등 공공성 목적의 금융지원(community development lending & investment) 수준에 중점을 둠

- (평가방식) 지역사회개발 금융비율(CD Financing Metric)을 통해 은행이 지역사회개발 관련 대출 및 투자에 투입한 자금 규모를 측정하며, 이는 평가구역 내 예금총액 대비 비율로 산출함(정량 및 정성 평가 병행, 정성평가 비중이 약 절반 이상을 차지)
- (평가대상)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선택적 적용)

표 4-13 | '지역사회개발 금융 평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내용	비교기준
지역사회 개발 금융비율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Metric)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액 / 평가구역 내 예금총액	은행이 지역사회개발 관련 대출·투자에 투입한 총 자금 규모를 평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복지·인프라 등 공익적 분야에 대한 금융공급 수준을 측정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대출·투자 유형별 구성비율 (Composition by Financing Type)	지역사회개발 대출금액 /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 총액 및 지역사회개발 투자금액 /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 총액	대출과 투자의 균형 및 다양성을 평가하며, 장기·지속적 투자 중심의 지역개발 금융구조를 측정	
활동 집중도 지표 (Activity Concentration Metric)	특정 지역사회개발 분야(예: 저·중소득층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대출·투자금액 /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 총액	은행의 금융활동이 지역의 주요 수요분야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평가	지역사회 기준치 (Community Benchmarks)
지속성 지표 (Sustainability/ Continuity Metric)	평가기간 내 연속적인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액 / 전체 지역사회개발 대출·투자금액	일회성 자금공급이 아닌, 지속적·안정적인 지역개발 금융을 수행했는지를 평가	과거 실적 및 지역사회 기준치 (Historical & Community Benchmarks)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표 4-14] '지역사회개발 금융 평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 Test)'의 정성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내용
지역수요대응 (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개발 금융이 지역의 실제 개발수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검토 지역의 주거·일자리·사회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를 고려한 자금 배분 여부
영향력(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개발 금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 주거안정·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성(Innova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금융방식이나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했는지를 검토 민관협력(PPP),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지속가능금융(ESG finance) 등 혁신적 접근의 활용 여부 평가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평가(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
 - (목적) 은행이 보유한 전문성, 인적 자원, 네트워크 등 비금융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며,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은행의 전문지식·시간·조직 역량을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투입한 정도와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둠
 - (평가방식) 은행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사회개발 관련 활동(금융교육, 상담, 공익사업 등) 건수 및 시간, 참여 직원 비율 등을 측정하여 은행의 인적자원 투입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실제 사회·경제적 필요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검토함(정량 및 정성 평가 병행, 정량평가는 정성평가 결과를 보완·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
 - (평가대상)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선택적 적용)

[표 4-15]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평가(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의 주요 정량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내용	비교기준
서비스 참여비율 (Employee Participation Rate)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참여 인원 수 / 전체 임직원 수	은행 임직원이 지역사회개발 관련 서비스(금융교육, 상담, 공익사업 등)에 얼마나 폭넓게 참여했는지를 평가	동종기관 평균값 (Market Benchmarks)
서비스 시간비율 (Service Hours Metric)	지역사회개발 관련 (봉사)활동 시간 / 총 근무시간 또는 임직원 수	지역사회개발에 투입된 인적 자원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	
활동 범위지표 (Coverage of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저·중소득 지역 또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건수 / 전체 서비스 건수	활동이 저·중소득 지역이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	지역사회 기준치 (Community Benchmarks)
지속성지표 (Service Continuity Metric)	최근 3년간 지속 수행된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건수 / 전체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건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인 지역사회 지원활동 여부를 평가	과거 실적 및 지역사회 기준치 (Historical & Community Benchmarks)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표 4-16]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평가(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Test)'의 정성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내용
지역수요대응 (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이 제공한 서비스가 사회의 실제 요구(예: 금융교육, 신용회복,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를 반영했는지를 검토 저·중소득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여부 등
영향력(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개발 서비스가 지역 주민과 기관에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 금융이해력 향상, 신용회복 지원,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개선 등의 구체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
혁신성(Innova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방식에 더해 새로운 접근법이나 협력모델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검토 디지털 금융교육, 사회적금융기관(CDFI)과의 협력,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 등 혁신적 서비스 제공 사례 중심으로 평가

출처: FDIC, OCC, FRB(2023). Interagency Final Rul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 외부에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 볼 때, 광역단체(도·도·부·현) 수준에서는 금고 지정 시에 금융기관의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나, 지역사회 기여도 역시 별도의 항목 혹은 고려사항으로서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지표 및 측정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도쿄도 자금관리방침(東京都資金管理方針)’과 ‘지정 금융기관 등의 지정 및 검사 요강(指定金融機関等の指定及び検査要綱)’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감독당국 기준 충족 여부, 유동성 확보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며, 지역사회 기여도나 사회공헌은 고려사항 수준으로서 다루어짐
 - 치바현(千葉県)은 ‘공금관리방침(公金管理方針)’에서 “도민의 편리성과 지역경제에의 기여를 고려하여 지역 금융기관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으나, 이를 점수화하거나 계량화한 세부 기준은 당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기후현(岐阜県)은 도의회 자료를 통해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 시 경영의 건전성·안정성, 도민의 편리성, 지정업무 수행체제, 도정 및 지역에서의 공헌상황 등 네 가지 관점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부 지표와 배점은 미제시됨
- 한편, 기초단체(시·정·촌)의 경우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바, 일부는 세부 배점표(심사표)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난시(阪南市, 오사카부)의 경우 금고지정 기준의 정성평가 항목에 ‘어필 포인트(어필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평가함
 - 미나미치타조(南知多町, 아이치현)는 ‘지정금융기관 선정요건(指定金融機関の選定要件)’을 통해 금고지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지정 금융기관으로서의 어필 포인트’를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음

- 해당 항목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를 통해 이들의 지역공헌 활동(금융접근성 개선, 중소기업 지원, 금융교육, 지역 행사 협력 등)을 유도함
- 즉, 이는 정성평가 방식이 적용되며, 금액이나 비율보다는 지역적 연계성과 공공성의 정도를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음
-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 기후현)는 ‘지정금융기관 등 선정심사기준(指定金融機関等選定審査基準)’을 통해 금고지정 기준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총점 100점의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 대분류 항목은 금융기관 개요(30점), 업무위탁료(20점), 펌(Firm)뱅킹 관련(15점),⁸⁾ 출납업무(15점), 시(市) 관련단체 취급(10점), 기타 제안(1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의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살펴보고자 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개요’ 항목 내에 ‘지역공헌 어필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지역사회 기여 방안(예: 금융교육, 소상공인 지원, 지역행사 협력 등)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함
 - 다만,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과 미국 CRA 규정상의 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개요’ 외의 다른 대분류 항목이나 그를 구성하는 타 세부항목 역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개요’ 항목 내의 ‘전담창구·파견체계 충실도’와 ‘ATM 설치 제안’, ‘기타 제안’ 항목에서의 ‘서비스 개선’ 등은 금융기관에 대한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음

8) 펌뱅킹은 인터넷뱅킹보다 상위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급여·수납업무를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처리하는 공공기관용 전자금융 시스템임

【 표 4-17 】 일본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의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기준

대분류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1. 금융기관 개요 (30점)	수행체계·실적·건전성	지정금융기관(및 출납취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내부통제 체계, 과거 수행 실적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재무적 건전성(감독 기준 충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전담창구·파견체계 충실도	시청·사업소 등 현장 대응 창구 운영, 전담 인력 배치, 신속 대응 체계 등 “파견하여 대응하는 조직·운영 방식”의 구체성과 안정성
	ATM 설치제안	ATM의 추가 설치·유지 계획, 특히 접근성 개선(취약지역 포함)에 관한 제안의 충실도
	위험관리·개인정보보호 체계	위험관리(내부통제·사고 예방)와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문서·절차·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
	재해 시 BCP(업무연속성계획)	재난·장애 상황에서의 업무 연속성(BCP) 설계와 훈련·대응 절차의 실효성
	지역공헌 어필 포인트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지역사회 기여 내용(예: 금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주민편의 지원 등)과 그 차별적 강점(어필 포인트)의 구체성·실행가능성
2. 업무위탁료 (20점)	수수료 등 비용의 경제성	제안된 수수료·제반비용이 합리적인지,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 등을 평가
3. 펌뱅킹 관련 (15점)	사용자 편의성·시스템 안정성·지원체계	사용자 관점의 이용 편의, 시스템 안정성, 지원(헬프 데스크·교육 등) 제안의 충실도
	정보보안 기능	인증·접근통제·암호화·로그 등 보안 기능의 수준
	계좌조회 기능	잔액·입출금 내역 조회 기능과 확인 편의성
	대량이체 기능	대량 지급 시 기능 제약 여부와 사용 편의성
	급여이체 기능	급여 지급에 특화된 기능의 제약 여부와 편의성
4. 출납업무 (15점)	원활한 출납업무 제안	원활한 출납업무를 위한 개선방안의 구체성
	수납·지급 처리 대응	세입·세출 처리 정확성·신속성
	오송금 등 오류처리 대응	착오송금 발생 시 정정·복구 절차의 신속·정확성
	일일보고·수지일계 대응	일일 결산 및 보고체계의 충실도
	권중 지정 현금출금 편의성	현금 권중 지정 인출 요청에 대한 대응 수준
	집·배송금, 야간금고 등 대응	현금 입금·배송, 야간금고 취급 등 특수 상황 대응
5. 시 관련단체 취급 (10점)	산하기관 공금 취급 가능성	시 산하기관 등 유관 단체 자금을 공금 기준에 준해 안전·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6. 기타 제안 (10점)	업무효율화·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화 또는 경비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제안 내용(전산화·프로세스 개선·민원 감축 등)의 충실도

주: 세부항목의 배점은 확인 불가

출처: 가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 기후현), ‘指定金融機関等選定審査基準’, city.kakamigahara.lg.jp, (확인일: 2025.10.31.)

2. 적정성 검토를 통한 후보 지표 선정

□ 선정 개요

- 앞서 살펴본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각종 평가 기준 및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후보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개별 자치단체 금고지정 관련 조례상의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대한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평가항목 5번) 내 세부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측정하기 위함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을 ‘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계획’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그들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평가지표를 선정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담당자 및 주요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업무 담당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관련 지표들에 대한 현실에서의 ‘검증가능성’과 ‘금융기관별 형평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진들이 후보 지표를 선정함
 - 여기서 ‘검증가능성’이란 평가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가 금융기관별로 기초자치단체 지역 수준에서까지 식별·관리 가능한지를 말하고, 9) ‘금융

9)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융기관의 유형을 전국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각 유형별로 자산·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고, 사업구조·영업범위·지역사회 공헌 여력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대상집단에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 기관 간 비교의 타당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같은 유형 안에서도 자산·자본 규모의 차이가 작지 않은바(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같은 지역 내의 기관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심함(예: 원주농협과 판부농협)),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상기관 선정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그 기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금고 지정 자격을 갖춘 곳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 상호금융은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본총액 대비 자산총액 비율 10% 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이 평가대상이 됨. 이 밖에,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외국은행지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및 소규모 저축은행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관별 형평성'이란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등 기존 동원 자원의 크기에 따라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이때, 이러한 '검증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대출 지원' 실적에 관한 평가지표는 대출금액과 차주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우선,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모든 지역별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동일 지역 내에서는 규모 조건(시장 여건)이 동일하므로, '누가 실제로 더 많은 서민대출을 실행했는가'라는 공급규모 자체가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음
 - 반면, 특정 비율형 지표(예: 서민대출 비율=서민대출액/전체 가계대출액)를 적용할 경우, 분모가 금융기관별로 달라 오히려 비교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군(郡) 단위와 같이 지역 내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영세·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대출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중소기업(법인) 대출 비중(=지역 중소기업 대출액/지역 전체 기업 대출액)'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대출 실적을 측정하는 것 역시 의미가 제한적일 것임
 - 즉, 같은 지역 내에서는 '시장점유형 관점의 총량 비교'가 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비율형 지표는 금융기관별 영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로 보여주거나 그것이 지닌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음에 따라, 절대 금액 기준의 평가방식이 그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차주 수' 역시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별 금융 포용성 또는 접근성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에, 금액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차주 수는 동일한 대출 규모라 하더라도 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는지, 아니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에게 분산되어 제공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줌

- 다시 말해, 일정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지원이 특정 직종·업종·소득군 등 일부에 편중될 경우, 지역 내 금융 포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 차주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대출이 지역 내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제공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접근성이 열악한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도달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군(郡) 단위 지역과 같이 생계형·소액 서민대출 수요가 높고 금융 취약계층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대출금액보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았는가’가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대출 건수’가 아닌 ‘차주 수’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이미 ‘대출 금액’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바, 대출 건수는 금액과 높은 상관성을 가짐으로써 실질적 정보가 중복되고, 동일 차주의 복수 대출로 인해 지역사회 기여 수준이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증가율도 함께 평가요소로 반영하였음

- 증가율은 특정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줌
- 절대 금액이나 차주 수 등만으로 평가할 경우 초기 자산 규모와 여신 여력이 큰 대형 금융기관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증가율은 이러한 규모 우위를 희석시키고 각 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출 공급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는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음
- 이에, 증가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규모 편향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노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군(郡) 단위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는 일부 대출의 총금액이나 차주 수가 절대적으로 작고, 정책자금 투입이나 특례상품 운영 등으로 인해 특정 연도의 그 규모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나 단순 평균 증가율은 실제 추세 또는 노력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최근 4개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3년 이동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증가율을 산정함
 - 다만, ‘3년 이동평균 증가율’을 활용하더라도,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일부 대출 유형의 차주 수나 출연금을 받은 교육기관 수 등이 절대적으로 작아 그 연도별 증가율이 과도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이 밖에, 후보 평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사·중복 내용 측정의 최소화) 평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표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한 활동·실적을 반복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출 지원 중심의 평가) 예·적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출상품 역시 본점에서 설계·승인되는 전국 단일구조로 운영되지만, 대출은 신용심사·담보여력·소득 구조 등 수요측 요인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상품이라도 지역별 실행 규모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함
 - 특히 예·적금은 개인 의사만 있으면 대부분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 대출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역별 승인률·실행률의 실질적 편차가 존재하기에,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별 영업전략이나 취약계층 접근성 등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 (해외 주요 제도 사례의 직접 적용 한계) 미국의 CRA와 같은 해외 주요 제도들은 그 목적과 고려 대상 등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행정체계, 사회·인구구조, 금융기관의 관련 데이터 확보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이에, 해당 평가지표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그 측정방식을 설정하였음

□ 후보 평가지표 선정 결과

-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총 37개의 후보지표를 선정하되, 이들 지표는 1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분되며, 해당 평가항목들은 다시 9개 평가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때, 각 부문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은 1~5개이고, 개별 평가항목에 포함된 평가지표는 1~4개임

○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금융기관이 지역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다시 지역경제에 재투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서, 1개의 평가항목 (지역자금 공급)과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지역 예대율
 - (선정목적) 지역에서 모은 예금이 다시 지역 내 대출로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해당 지역 총수신액 대비 총여신액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 (선정목적) 해당 금융기관이 단순히 높은 예대율을 유지하는지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금년도 지역 예대율 - 전년도 지역 예대율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3: 지역 여신비율
 - (선정목적) 전국 대비 지역여신의 비중을 측정하여 ‘지역 대출시장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전국 총여신액 대비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측정지표4: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증기적 대출공급 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 여신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경제의 핵심 구성요소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수준과 지역 업체와의 거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4개의 평가항목(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지역 업체 거래 실적)과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¹⁰⁾

- 평가지표1: 지역중소기업 대출금액

- (선정목적)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유지에 필요한 금융공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법인)으로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외
- (측정) 지역중소기업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지역중소기업 대출금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중기적 대출공급 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중소기업 대출금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3: 지역중소기업 차주 수

- (선정목적) 대출이 특정 소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기업 전반에 공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지역중소기업 차주 수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10) 중앙정부(행안부, 중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 관련 평가체계에서 ‘지역 기업 지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기업을 포괄하는 최상위 항목으로 사용됨

- 평가지표4: 지역중소기업 차주 수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차주 수의 중기적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중소기업 차주 수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5: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액
 - (선정목적) 사회적 가치 및 고용 지원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사회적 경제기업 정의)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은행연합회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동일
 - (측정)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6: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중기적 대출공급 증가추세(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함
 - (측정)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7: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차주 수
 - (선정목적) 대출이 특정 소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기업 전반에 공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차주 수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8: 지역소상공인 대출금액
 - (선정목적) 지역경제의 기반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지역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 (측정) 지역소상공인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9: 지역소상공인 대출금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증기적 대출공급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소상공인 대출금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10: 지역소상공인 차주 수
 - (선정목적) 대출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 전반에 공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지역소상공인 차주 수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11: 지역소상공인 차주 수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차주 수의 증기적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소상공인 차주 수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12: 지역 업체 거래 비중
 - (선정목적) 금융기관이 지역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총 물품구매·외주업체 대상 지출액 대비 지역 소재 물품구매·외주업체 대상 지출액

- (참고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서민 지원 부문) 지역의 서민·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불평등 완화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1개의 평가항목 (지역서민 대출 지원)과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지역서민 대출금액
 - (선정목적) 지역 내 저소득층·신용취약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 (측정) 지역 내 서민대출상품 신규 취급액 총합
 - (서민대출상품 예시) 새희망홀씨대출, 비조증부 중·저신용자 가계 신용대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대출 등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지역서민 대출금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중기적 대출공급 증가추세(노력도)를 파악
 - (측정) 지역서민 대출금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3: 지역서민 대출 차주 수
 - (선정목적) 대출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역서민 전반에 공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 (측정) 지역서민 차주 수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4: 지역서민 대출 차주 수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차주 수의 중기적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서민 차주 수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미국 CRA,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지역주민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2개의 평가항목(지점 및 출장소 수, 자동화기기 수)과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지점 및 출장소 수 비율
 - (선정목적) 지역주민이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의 구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 (측정) 인구 천명당 점포+출장소 수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본 '지정금융기관 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자동화기기 수 비율
 - (선정목적) 지역주민이 디지털·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대안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 (측정) 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 (자동화기기 범위) CD, ATM, 기타 스마트 키오스크 등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공동 ATM은 자행 ATM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에만 해당 기관 ATM으로 인정)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본 '지정금융기관 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

- (지역인재육성 부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인재육성 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2개의 평가항목(지역교육기관 기부, 지역 장학사업)과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지역교육기관 대상 기부액
 - (선정목적) 지역 내 교육기관(대학, 초·중·고교 등)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금융기관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 (측정) 금액+현물 환산액
 - (참고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기부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기부액의 중기적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교육기관 대상 기부액 3개년 평균 증가율 변화율
 - (참고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3: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
 - (선정목적) 기부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역교육기관 전반에 공급되는지(지원 범위의 다양성)를 평가하기 위한
 - (측정) 기부 대상 지역교육기관 수
 - (참고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4: 출연금(장학금)액
 - (선정목적) 지역인재의 교육·진학을 위한 실질적 재정 기여 수준 평가
 - (측정) 지역 내 교육기관 등 대상 출연금(장학금) 총액(현금 기준)
 - (참고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5: 출연금(장학금)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장학사업의 지속성 및 중기적 지원추세(노력도) 평가

- (측정) 출연금(장학금) 3개년 이동평균 출연금 증가율
- (참고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6: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
 - (선정목적) 장학사업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 기관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출연 대상 기관 수
 - (참고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지역의 고용 확대에 금융기관이 실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2개의 평가항목(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지역인재 채용)과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액
 - (선정목적)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여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함
 - (측정) 지역의 청년 창업자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 총액
 - (참고제도) 미국 CRA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대출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선정목적) 단일연도 변동성을 제거한 중기적 대출공급 증가추세(노력도) 파악
 - (측정)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액 3개년 이동평균 증가율
 - (참고제도) 미국 CRA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3: 지역청년 창업대출 차주 수
 - (선정목적) 지원 규모뿐 아니라 수혜자 범위 확대 여부 확인
 - (측정) 지역청년 창업대출 차주 수
 - (참고제도) 미국 CRA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4: 지역인재 채용 비율

- (선정목적) 금융기관이 지역 고용 창출에 직접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최근 3년간 지역 전체 신규 배치(채용) 직원수 대비 지역인재 신규 배치(채용) 직원수
- (지역인재 정의) 금융기관이 소재한 지역(시·도)에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보이스포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문해력 향상 등 지역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1개의 평가항목(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과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 수준

- (선정목적) 지역의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피해 예방·보호 노력 수준 평가
- (측정) 프로그램 수혜(참여) 인원수 합계
- (해당 프로그램)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 예방교육, 상담, 캠페인 등
- (참고제도) 금융기관별 내부 준칙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평가지표2: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 (선정목적) 지역주민의 금융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여 수준 평가
- (측정) 프로그램 수혜 인원수 합계
- (해당 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 금융교육(예: 찾아가는 금융교실), 맞춤형 상담 등
- (참고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금융기관별 내부 준칙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2개의 평가항목(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지역 환경보호 활동 실적)과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지표1: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

- (선정목적)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을 통해 지역의 탄소 감축,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에 금융기관이 기여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측정) 지역 내 친환경 대출상품 신규 취급 건수
- (친환경 대출상품 예시) 친환경 자동차 대출, 친환경농업(스마트팜 등) 지원 대출, 태양광발전사업자 전용 대출 등
- (참고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고려사항) 현재 금융기관별 친환경 대출상품의 수와 취급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이의 유인 차원에서 설정할 필요성 존재

- 평가지표2: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

- (선정목적) 임직원이 지역 내 환경정화·녹지조성·자원순환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연환경 개선에 기여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 (측정) $\sum(\text{활동별 참여인원} \times \text{참여시간})$
- (참고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기타 지역사회 기여(공헌) 부문) 정량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에 해당함

- (선정목적) 지역경제·복지·문화·재해구호 등 다양한 형태의 공헌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보다 종합적·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 (측정) 금융기관이 제출한 서술형 보고 내용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 정성평가

- (참고제도) 미국 CRA, 일본 ‘지정금융기관 제도’,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일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적용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표 4-18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후보 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식
1	지역 자금 역내 순환	지역 예대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총수신액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금년도 지역 예대율-전년도 지역 예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 여신 비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전국 총여신액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2	지역 중소기업 (법인) 대출 지원	대출금액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대출금액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식
	지역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대출금액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text{당해연도}(t)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text{당해연도}(t)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업체 거래 실적	지역 업체 거래 비중	지역 소재 물품구매·외주업체 대상 지출액 / 총 물품구매·외주업체 대상 지출액 ※ 순위별 배점 부여
3	지역 서민 지원	대출금액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text{당해연도}(t)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text{당해연도}(t)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차주 수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4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text{지역 점포} + \text{출장소 수}) / (\text{지역 인구} \times 0.001)$ ※ 순위별 배점 부여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지역 자동화기기* 수 / (지역 인구 \times 0.001) * 자동화기기: 점포와 다른 곳에 설치된 ATM, CD, 키오스크 등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 순위별 배점 부여
5	지역 인재 육성	기부액	기부 금액 + 현물 환산액 ※ 순위별 배점 부여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text{당해연도}(t)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기부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기부금액 증가율}) / \text{전년도}(t-1) \text{ 기준 } 3\text{개년 평균 기부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식
	지역 장학사업	출연금(장학금)액	※ 순위별 배점 부여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출연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출연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출연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6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액	신규 대출 취급액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당해연도(t)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전년도(t-1) 기준 3개년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 ※ 순위별 배점 부여
		차주 수	※ 순위별 배점 부여
7 지역 금융 소비자 역량 강화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프로그램* 전체 수혜인원(또는 참여인원)) *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캠페인 등 ※ 순위별 배점 부여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프로그램* 수혜인원 * 프로그램: 금융교육, 맞춤형 상담 등 ※ 순위별 배점 부여
8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	신규 대출 건수 총합 ※ 순위별 배점 부여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	∑(활동별 참여인원 × 활동시간)
9 기타 지역사회 기여 (공헌)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문화·예술 증진, 재해 구호 등을 위해 활동한 그 밖의 실적	정성평가	건수별(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지원금액(기부금, 출연금, 현물 환산액 등), 활동 내용 및 시간, 참여인원, 수혜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서술 ※ 순위별 배점 부여

제3절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1. 지표별 중요도 산정 방식: 델파이(Delphi) 조사

□ 조사 목적 및 대상

- 앞서 마련한 각 후보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 개별 평가지표가 실제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져야 하는지, 지표 간 비중이 균형적인지, 특정 지표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반대로 소외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합의 기반의 산정 과정이 필수적임
 - 이때, 델파이 기법은 1차 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 동일 문항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반복 절차를 통해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시키는 방식으로, 합의 기반의 안정적인 산정값을 확보하는 데 적합함
-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한편, 조사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담당자 10명과 학계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및 2차 조사 모두에서 전원이 응답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지역적·행정적 편증을 방지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세분화하여 선정함
 -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도, 수도권-비수도권 시, 수도권-비수도권 군, 수도권-비수도권 자치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10명을 구성하였음
 - 이러한 설계는 지역 유형별로 상이한 금융 수요 특성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4-19 | 델파이 조사 대상

구분	인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담당 공무원	10명
대학 교수(금융 혹은 지방행정 전문가)	3명
연구기관 소속 박사(금융 혹은 지방행정 전문가)	2명

□ 조사 내용 및 절차

- 본 델파이 조사는 이미 연구진에 의해 마련된 후보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개별 지표의 절대적 중요도와 이를 포함하는 각 부문·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확인형(confirmatory)으로 설계됨
 - 이에 따라 새로운 지표의 발굴 혹은 추가를 위한 개방형 문항은 포함하지 않음
- 당해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전화·이메일)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전자우편으로 조사지를 배포하여 수행함
 - 조사기간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약 2주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음
- 구체적으로, 1차 조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짐
 - 먼저, 부문·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전체를 제시하고, 각 지표의 절대적 중요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 수준과 응답의 합의도 등을 파악하여 지표군의 전반적 구조를 점검함
 - 또한, 중요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지표를 식별하여 이후 단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이어서, 평가 부문 및 항목 간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문별·항목별로 총 100점을 배분하도록 하는 문항을 제시하여 부문·항목 단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음
-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응답자에게 제공한 뒤 동일 문항에 대해 다시 평가하도록 구성함
 - 이는 응답자가 1차 결과(타인의 개별 응답이 아닌 집계된 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전형적인 델파이 방식에 기반한 것임

- 이러한 2차 조사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 및 그 수렴 여부, 평가 부문·항목별 상대적 비중을 재차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함

□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지표별 중요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각 지표의 절대적 중요도 수준을 파악함
 - 이때, 리커트 5점 척도 기반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 평균값 또는 중앙값 3.5 이상을 긍정적 기준으로 활용한 선행연구들(권진욱 외, 2021; Makhdoom, 2009; Shah et al., 2019)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이 3.5 이상이면 해당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평균값이 3.0~3.4 수준인 경우에는 보통(중간) 수준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으며, 그 값이 3.0 미만으로 나타난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낮다고 보아 조정·축소의 대상으로 여김
- 또한, 응답자의 합의도(agreement)는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 이하 IQR)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IQR은 전체 응답값을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상위 25% 지점(Q3)과 하위 25% 지점(Q1)의 차이를 의미함
 - 이때, IQR이 작을수록 전문가들의 응답이 한 구간 내로 밀집해 있어 의견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IQR이 클수록 응답 분포가 넓게 퍼져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IQR \leq 1.0$ 이면 응답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IQR이 1.0을 초과하더라도 평균값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표 자체는 유지하되 비중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음
- 요컨대, 후보 지표들 가운데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도 평균값이 3.0 미만으로 산출되거나 IQR이 1.0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최종 지표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2. 지표별 중요도 산정 결과(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세부 지표별 중요도 산정 결과

-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 해당 부문을 이루는 4개의 세부 지표 가운데 ‘지역 예대율(4.2)’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3.7)’과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5)’ 또한 모두 그 중요도의 평균값이 3.5 이상으로 도출됨
- 다만, ‘지역 여신 비율(3.4)’의 중요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됨
- 한편, 모든 지표에서 IQR이 1.0 이하로 산출되어 응답자 간 의견 분산이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자금 역내 순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예대율	4.2	1.0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3.7	0.5
		지역 여신 비율	3.4	1.0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1.0

- 지역기업 지원 부문

- 당해 부문은 총 1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우선,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항목의 지표들 가운데서는 ‘대출 금액(3.9)’,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8)’, ‘차주 수(3.8)’,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5)’ 순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
- 또한,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항목의 지표 중에서는 ‘대출 금액(3.7)’, ‘차주 수(3.6)’,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5)’ 순으로 중요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아울러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항목을 이루는 지표들 가운데서는 ‘대출금액(4.0)’, ‘차주 수(3.9)’,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7)’,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5)’ 순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가 산출됨
- 반면, 지역업체 거래 실적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업체 거래 비중(3.3)’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대부분 지표에서 IQR이 1.0 이하로 산출되어 응답자 의견 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합의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지표(지역 중소기업 대출금액,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액, 지역 소상공인 대출금액, 지역 소상공인 대출 차주 수)의 경우 IQR이 1.5~2.0 수준으로 나타나, 2차 조사 시 해당 지표들의 중요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요구됨

표 4-21 | 지역기업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기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대출금액	3.9	2.0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8	0.0
		차주 수	3.8	1.0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5	1.0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대출금액	3.7	2.0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1.0
		차주 수	3.6	1.0
	지역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대출금액	4.0	2.0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7	1.0
		차주 수	3.9	1.5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5	1.0
	지역업체 거래 실적	지역 업체 거래 비중	3.3	1.0

- 지역서민 지원 부문

- 해당 부문을 이루는 4개의 세부 지표 중에서 ‘차주 수(4.1)’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고, ‘대출금액(3.9)’,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7)’,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7)’도 모두 그 중요도의 평균값이 3.5 이상으로 도출됨
- 한편, 모든 지표에서 IQR이 1.0 이하로 산출되어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도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22】 지역서민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서민 지원	지역서민 대출 지원	대출금액	3.9	0.5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7	0.5
		차주 수	4.1	1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7	0.5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2개의 세부 지표 가운데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4.3)’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자동화기기 수 비율(3.8)’ 역시 평균값 3.5 이상을 기록하여, 지역주민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 다만, ‘자동화기기 수 비율’의 경우 IQR이 1.5로 나타난바, 2차 조사 시 해당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요구됨
- 그 외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은 IQR이 1.0으로 도출되어, 당해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 간 합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표 4-23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4.3	1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3.8	1.5

- 지역인재육성 부문

- 해당 부문에는 총 6개의 세부 지표가 존재함
- 먼저, 지역교육기관 기부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들 가운데서는 ‘기부액 (3.4)’과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3.1)’이 보통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냄
- 다만,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2.9)’의 중요도는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바, 현재의 단계에서는 앞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장학사업 항목의 평가지표 중에서는 ‘출연금(장학금)액(3.7)’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지만,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3)’과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3.1)’은 보통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
- 한편, 일부 지표(‘지원 교육기관(기부 대상) 수’, ‘출연금(장학금)액’,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의 경우 IQR이 1.5~2.0 수준으로 도출되어, 2차 조사 시 해당 지표들의 중요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요구됨
- 그 외 지표들은 IQR이 1.0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표 4-24 |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인재 육성	지역 교육기관 기부	기부액	3.4	1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	3.1	1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	2.9	2
	지역 장학사업	출연금(장학금)액	3.7	1.5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1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	3.1	1.5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 당해 부문은 총 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우선,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항목의 지표들 가운데서는 ‘대출 금액(3.7)’과 ‘차주 수(3.5)’의 중요도 평균값이 3.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3)’의 중요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한편, ‘지역인재 채용 비율(4.1)’은 매우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에 따라 부문 내 핵심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 합의도 측면에서는 모든 지표의 IQR이 1.0 이하로 도출되어,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보임

표 4-25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액	3.7	1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1
		차주 수	3.5	1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채용 비율	4.1	1

-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 해당 부문을 이루는 2개의 세부 지표 가운데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3.8)’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반면,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3.4)’의 중요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의 경우 IQR이 2로 나타난 만큼, 2차 조사 시 해당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반면,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은 IQR이 1.0을 나타내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26 |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3.8	2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3.4	1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2개의 세부 지표 모두 중요도 평균값이 3.0 미만으로 도출되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었음
- 구체적으로,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2.6)’와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2.7)’ 전부 그 중요도가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합의도 측면에서는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의 경우 IQR이 1.0으로 산출되어 의견 편차가 크지 않았던 반면,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는 IQR이 2.0으로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기준(중요도 평균 3.0 미만 또는 IQR 1.0 초과 시 제외)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의 두 지표는 현재까지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4-27 |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	2.6	1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	2.7	2

○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비중) 산정 결과

- 지역기업 지원 부문

- 해당 부문은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36.7%)’에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함
- 이어서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30.7%)’,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20.3%)’, ‘지역업체 거래 실적(12.3%)’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크다고 인식함

【표 4-28】 지역기업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지역기업 지원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36.7 (%)	30.0~40.0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20.3 (%)	12.5~30.0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30.7 (%)	25.0~35.0
	지역업체 거래 실적	12.3 (%)	10.0~15.0
계		100.0 (%)	-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두 가지 평가항목 중 ‘지점 및 출장소 수(61%)’가 ‘자동화기기 수(39%)’에 비해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 이는 대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 여전히 지역주민 편의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동화기기 확충만으로는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한계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표 4-29】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61.0 (%)	50.0~80.0
	자동화기기 수	39.0 (%)	20.0~50.0
계		100.0 (%)	-

- 지역인재육성 부문

- 해당 부문을 이루는 두 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 장학사업(60.7%)’이 ‘지역 교육기관 기부(39.3%)’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이 기부를 통해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장학금 형태로 학생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원 방식이 지역인재육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되었음을 나타냄

| 표 4-30 |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지역인재육성	지역 교육기관 기부	39.3 (%)	40.0~50.0
	지역 장학사업	60.7 (%)	50.0~60.0
계		100.0 (%)	-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두 가지 평가항목 중 ‘지역인재 채용(52.3%)’이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47.7%)’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표 4-31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7.7 (%)	32.5~60.0
	지역인재 채용	52.3 (%)	40.0~67.5
계		100.0 (%)	-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 당해 부문을 이루는 두 가지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52.7%)’이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47.3%)’보다 약간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이러한 양상은 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응답자들이 더 크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됨
- 다만, 2차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문 및 항목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 지표의 중요도 혹은 합의도가 기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자체가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함

표 4-32 |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47.3 (%)	40.0~62.5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	52.7 (%)	37.5~60.0
계		100.0 (%)	-

○ 평가부문별 상대적 중요도(비중) 산정 결과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관한 전체 아홉 가지 평가부문 가운데, 응답자들은 ‘지역기업 지원(17.8%)’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였음
- 이어서 ‘지역자금 역내 순환(15.9%)’, ‘지역서민 지원(15.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4.2%)’, ‘지역일자리 창출(11.9%)’, ‘지역인재육성(9.5%)’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크다고 인식함
- 한편,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5.7%)’,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4.6%)’,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5.1%)’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냄
- 평가부문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금융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 자금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중요도는 높게 인식된 반면, 지역 환경보호나 금융교육과 같이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됨

| 표 4-33 |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5.9 (%)	12.5~20.0
2	지역기업 지원	17.8 (%)	15.0~20.0
3	지역서민 지원	15.3 (%)	15.0~20.0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4.2 (%)	9.0~20.0
5	지역인재육성	9.5 (%)	5.0~10.0
6	지역일자리 창출	11.9 (%)	9.0~15.0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5.7 (%)	4.5~9.0
8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4.6 (%)	5.0~5.0
9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	5.1 (%)	4.5~5.0
	계	100.0 (%)	-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세부 지표별 중요도 산정 결과

-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4개의 세부 지표 가운데 '지역 예대율(4.3)'의 중요도 평균값이 1차 조사 결과보다 소폭 상승하여 지역자금 역내 순환 정도 (금융기관의 지역자금 공급 수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함
-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3.8)' 역시 1차 조사 결과 대비 그 중요도 평균값이 약간 상승하였으며,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5)'의 중요도는 1차 조사 결과 당시와 동일하게 인식됨
- 다만, '지역 여신 비율(3.3)'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하락함
- 한편, 모든 지표에서 IQR이 1.0 이하로 유지되어 1차 조사에 이어 응답자 간 합의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

[표 4-34]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자금 역내 순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예대율	4.2	4.3	1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3.7	3.8	0.5
		지역 여신 비율	3.4	3.3	1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3.5	1

- 지역기업 지원 부문

- 2차 조사 결과,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그 중요도가 상승하거나 유지되었고, IQR은 하락하여 응답자 간 합의도가 개선된 모습을 보임
-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항목을 이루는 지표들의 중요도는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3.7)’의 중요도 평균값만이 1차 조사 결과보다 소폭 상승함
- 반면,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항목의 지표들은 1차 조사 결과 대비 그 중요도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였고,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8)’만이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값을 나타냄
- 아울러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항목의 경우 ‘대출금액(4.1)’과 ‘차주 수(4.0)’ 각각의 중요도 평균값이 1차 조사 결과보다 소폭 상승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었으나,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6)’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 대비 약간 하락한 양상을 보임
- 또한, 지역업체 거래 실적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업체 거래 비중(3.1)’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3.3)에 비해 더 하락함으로써, 지역기업 지원 부문 내 지표들 가운데 중요성이 가장 낮게 형성됨
- 한편, 1차 조사 결과 당시 합의도가 낮았던 일부 지표(‘지역 중소기업 대출금액’,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액’, ‘지역 소상공인 대출금액’, ‘지역 소상공인 대출 차주 수’)를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IQR이 1 이하로 도출된바, 응답자 간 의견이 전반적으로 더욱 수렴된 모습을 나타냄

| 표 4-35 | 지역기업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기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대출금액	3.9	3.9	0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8	3.8	0
		차주 수	3.8	3.8	0.5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5	3.7	1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대출금액	3.7	3.8	1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3.5	1
		차주 수	3.6	3.7	1
	지역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대출금액	4.0	4.1	1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7	3.6	1
		차주 수	3.9	4.0	0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5	3.5	1
	지역업체 거래 실적	지역 업체 거래 비중	3.3	3.1	1

- 지역서민 지원 부문

- 2차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4개의 세부 지표 모두 그 중요도의 평균값이 3.5 이상으로 유지됨
- 특히, '차주 수(4.3)'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4.1)보다 상승하여 금융기관의 지역서민 지원(대출)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나타냈고, 나머지 지표들 역시 그 중요도의 평균값이 1차 조사 결과 대비 소폭 상승함
- 이와 함께 개별 지표의 IQR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응답자 간 의견 수렴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표 4-36 | 지역서민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서민 지원	지역서민 대출 지원	대출금액	3.9	4.0	0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7	3.8	0
		차주 수	4.1	4.3	1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7	3.8	0.5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 당해 부문을 이루는 2개의 세부 지표 가운데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4.3)’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자동화기기 수 비율(3.6)’은 중요도 평균값이 1차 조사 결과(3.8)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임
- 그럼에도, 두 지표의 중요도 평균값은 2차 조사 결과에서도 모두 여전히 3.5 이상을 유지함
- 또한, 두 지표의 IQR이 각각 1.0 이하로 도출되어, 1차 조사 당시 일부 지표(자동화기기 수 비율)에 나타났던 응답자 간 의견 편차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 표 4-37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4.3	4.3	1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3.8	3.6	1

- 지역인재육성 부문

- 2차 조사 결과,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부 지표는 중요도가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하락한 모습을 보임
- 구체적으로, 지역교육기관 기부 항목에서는 모든 지표의 중요도 평균값이 1차 조사 결과 대비 하락하였는데,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2.8)’는 여전히

3.0 미만의 값을 나타내어 지역인재육성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최종 지표에서 제외시키고자 함(IQR=1.0)

- 지역 장학사업 항목의 경우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3)’ 만이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중요도 평균값을 보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그 값이 하락한 모습을 나타냄
- 특히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2.9)’는 2차 조사 결과에서 중요도 평균값이 3.0에 미달함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최종 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IQR=0.5)
- 한편, 개별 지표의 IQR이 모두 1.0 이하로 도출되어 응답자 간 의견 편차가 전반적으로 완화됨

【 표 4-38 】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인재육성	지역 교육기관 기부	기부액	3.4	3.3	1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	3.1	3.0	0.5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	2.9	2.8	1
	지역 장학사업	출연금(장학금)액	3.7	3.5	1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3.3	1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	3.1	2.9	0.5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의 중요도는 상승 혹은 하락하거나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모습을 나타냄
-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항목의 지표들 가운데 ‘대출금액(3.6)’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3.7)에 비해 약간 하락한 반면, ‘차주 수(3.7)’는 그 값이 소폭 상승하였고,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3.3)’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 또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4.1)’ 역시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에 따라, 부문 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합의도 측면에서는 모든 지표의 IQR이 1.0 이하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간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표 4-39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액	3.7	3.6	1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3.3	1
		차주 수	3.5	3.7	0.5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채용 비율	4.1	4.1	1

-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 해당 부문을 이루는 2개의 세부 지표 중에서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3.8)’의 중요도 평균값은 1차 조사 결과 대비 하락 하였으나,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3.5)’는 그 값이 소폭 상승함
 - 또한, 두 지표의 IQR이 모두 1.0을 나타내어, 응답자 간 합의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표 4-40 |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3.8	3.6	1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3.4	3.5	1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 당해 부문은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나, 2차 조사 결과에서도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와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 모두 중요도 평균값은 3.0 미만으로 산출됨

- 특히, 두 지표는 1차 조사 결과 대비 중요도 평균값이 오히려 더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적합성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두 지표의 IQR은 모두 1.0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곧 '낮은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간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점을 의미함
- 이에 따라, 해당 지표들과 이들이 구성하는 각 평가항목 및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전체를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41 |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세부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평균값		IQR
			1차	2차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	2.6	2.3	1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	2.7	2.5	1

○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비중) 산정 결과

- 지역기업 지원 부문

- 해당 부문은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2차 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36.5%)'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유지하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역기업 지원 부문에 있어서 핵심 기능이라는 인식이 지속됨
- 이어서 '지역소상공인 대출 지원(30.1%)',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21.1%)', '지역업체 거래 실적(12.3%)'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크다고 평가되었으며, 전체 비중 구조는 1차 조사 결과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수렴 양상을 나타냄
- 한편, '지역업체 거래 실적'의 비중이 가장 낮게 유지된 결과는 간접적 기여보다는 대출 중심의 직접적 지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을 시사함

| 표 4-42 | 지역기업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지역기업 지원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36.7 (%)	36.5 (%)	30.0~40.0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20.3 (%)	21.1 (%)	15.0~30.0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30.7 (%)	30.1 (%)	27.5~35.0
	지역업체 거래 실적	12.3 (%)	12.3 (%)	10.0~15.0
계		100.0 (%)		-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 2차 조사 결과, 당해 부문을 구성하는 두 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지점 및 출장소 수(62.1%)’가 ‘자동화기기 수(37.9%)’보다 확연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음
- 이는 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재확인되었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도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면 기반의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표 4-43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61.0 (%)	62.1 (%)	55.0~72.5
	자동화기기 수	39.0 (%)	37.9 (%)	27.5~45.0
계		100.0 (%)		-

- 지역인재육성 부문

- 2차 조사를 통해 ‘지역 장학사업(62.0%)’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지역 교육기관 기부(38.0%)’의 비중은 감소함

- 이는 학생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전달되는 장학금 지원 방식이 지역인재 육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의 공고화를 시사함
- 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 방식보다 지역 내 인재의 학업 지속과 정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지원 방식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됨

| 표 4-44 |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지역인재육성	지역 교육기관 기부	39.3 (%)	38.0 (%)	37.5~50.0
	지역 장학사업	60.7 (%)	62.0 (%)	50.0~62.5
계		100.0 (%)		-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 2차 조사 결과,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49.1%)’과 ‘지역인재 채용(50.9%)’ 간의 비중 격차가 1차 조사 결과 대비 상당히 축소됨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기존의 채용 중심에서 창업 지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줌
- 즉, 금융기관이 단순히 지역청년을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는 창업 활동 또한 지역의 고용 수준을 늘리는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

| 표 4-45 |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7.7 (%)	49.1 (%)	40.0~60.0
	지역인재 채용	52.3 (%)	50.9 (%)	40.0~60.0
계		100.0 (%)		-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 2차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문을 이루는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53.3%)’의 상대적 중요도가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46.7%)’보다 소폭 높게 유지된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비중 구조를 나타냄
 - 이는 응답자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활동에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한 결과로 해석됨
 - 다만, 2차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 항목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 지표의 중요도 평균값이 3.0 미만으로 도출됨에 따라(IQR=1), 당해 평가항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전체를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하고자 함

표 4-46 |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친환경 금융상품 대출 실적	47.3 (%)	46.7 (%)	37.5~57.5
	지역환경 보호활동 실적	52.7 (%)	53.3 (%)	42.5~62.5
계		100.0 (%)		-

○ 평가부문별 상대적 중요도(비중) 산정 결과

- 2차 조사 결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부문의 상대적 비중 구조는 1차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먼저, ‘지역기업 지원(17.4%)’과 ‘지역자금 역내 순환(16.7%)’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평가부문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사회 기여의 중심축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음으로, ‘지역서민 지원(16.7%)’ 역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서민·저신용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함
- 또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4.0%)’과 ‘지역일자리 창출(11.3%)’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여 주요한 평가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지역인재육성(8.1%)'의 비중은 1차 조사 결과 대비 1%p 이상 감소함으로써, 그 상대적 중요도가 적지 않게 하락한 모습을 나타냄
- 한편,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6.0%)',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5.0%)',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4.7%)'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임
-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은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 지표의 중요도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 따라서, 당해 부문을 제외하고 남은 8개 부문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100.0%를 기준으로 재정규화하여 최종 평가지표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 영역의 ESG 관련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성평가 또는 추가 지표 개발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판단됨

표 4-47 |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부문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1분위~3분위	
	1차	2차			
		당초	재산정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5.9 (%)	16.7 (%)	17.6 (%)	15.0~20.0
2	지역기업 지원	17.8 (%)	17.4 (%)	18.3 (%)	15.0~19.5
3	지역서민 지원	15.3 (%)	16.7 (%)	17.6 (%)	14.5~20.0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4.2 (%)	14.0 (%)	14.8 (%)	10.0~19.5
5	지역인재육성	9.5 (%)	8.1 (%)	11.9 (%)	5.0~10.0
6	지역일자리 창출	11.9 (%)	11.3 (%)	8.5 (%)	9.0~15.0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5.7 (%)	6.0 (%)	6.3 (%)	5.0~8.5
8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4.6 (%)	5.0 (%)	-	5.0~5.0
9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	5.1 (%)	4.7 (%)	5.0 (%)	5.0~5.0
계		100.0 (%)			-

주: '당초'는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이 평가체계에 포함된 상태에서 도출된 부문별 상대적 비중에 해당하고, '재산정'은 해당 부문을 제외한 이후 남은 8개 부문의 상대적 비중을 100.0% 기준으로 재정규화하여 산출한 값임

제4절

소결: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정립

1.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 후보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문별 후보 지표의 중요도 평균값(5점 척도 기준)이 대부분 3.5점 이상으로 도출되어 최종 평가지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중요도를 갖춘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서민 지원 부문,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의 지표들은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으로서 비교적 높은 중요도가 확인됨
- 한편, 합의도(IQR)는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로 수렴하여 전문가 간 의견의 일치 수준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조사 결과에서 IQR 값이 1.5 내외로 다소 높게 나타나 의견의 분산이 존재하던 일부 지표들 역시 2차 조사 결과에서 안정적인 수렴 양상을 보임
- 반대로 중요도나 합의도가 일정 기준(중요도 평균값 ≥ 3.0 , IQR ≤ 1.0)을 충족하지 못한 4개의 후보 지표는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함
 - 지역인재육성 부문에 속한 2개의 지표(지역 교육기관 기부 항목의 '지원 기관(기부 대상) 수'와 지역 장학사업 항목의 '협력 기관(출연 대상) 수')가 2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중요도 평균값 3.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임
 -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에 포함된 2개의 지표('친환경 대출상품 취급 건수'와 '지역환경 보호활동 참여도')는 1·2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중요도 평균값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33개의 세부 평가지표(정량 32개+정성 1개)가 확정됨

□ 평가 부문 및 항목 중요도 조사 결과

- 평가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비중) 분석 결과,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과 연계된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서민 지원 부문,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응답자 집단의 공통된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정성평가 부문(기타 지역사회 기여)은 정량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실적을 보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그 상대적 중요도는 다소 낮게 평가됨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부문은 그를 구성하는 모든 세부 지표의 중요도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정량평가지표 체계에서 제외함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8개 평가부문(정량 7개+정성 1개)이 확정됨
- 한편, 지역기업 지원 부문의 평가항목 중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법인)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에서는 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대표하는 항목으로서 지점 및 출장소 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지역인재육성 부문의 평가항목 가운데서는 학생 개인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장학금 지원 방식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2. 최종 평가지표 체계 산출 방식

□ 1단계: 평가부문별 배점(100점 기준) 환산

- 텔파이 조사 결과 최종 도출된 8개 평가부문의 상대적 비중(재산정 값)을 100점 만점 기준의 부문별 배점 체계로 전환함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상대적 비중은 이미 총합이 100.0%가 되도록 정규화된 값임
- 이때, 실제 평가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 비중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배점을 단순화함

- 예를 들어,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은 17.6%에서 18점으로, 지역인재육성 부문은 11.9%에서 12점으로 조정하게 됨
- 이 과정에서 개별 부문에 대한 상대적 서열과 중요도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합계가 정확히 100점이 되도록 ±1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미세 조정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델파이 조사 결과로 확보된 전문가 합의 기반의 가중치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평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수 단위의 부문별 배점을 최종 확정함

[표 4-48] 평가부문별 배점 산출 결과

	평가부문	상대적 중요도	배점 환산 결과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7.6 (%)	18점
2	지역기업 지원	18.3 (%)	18점
3	지역서민 지원	17.6 (%)	18점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4.8 (%)	15점
5	지역인재육성	11.9 (%)	12점
6	지역일자리 창출	8.5 (%)	8점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6.3 (%)	6점
8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	5.0 (%)	5점
	계	100.0 (%)	100점

□ 2단계: 평가항목별 배점 산출

- 부문별 배점이 확정된 이후에는, 각 부문에 포함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항목별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해당 부문의 배점을 비례 배분함
 - 즉, 부문 j 의 배점(B_j)과 해당 부문 내 평가항목 k 의 상대 비중(w_{jk})을 활용하여 항목별 배점(A_{jk})을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함

$$A_{jk} = B_j \times \frac{w_{jk}}{100}$$

- 예를 들어, 지역기업 지원 부문의 총 배점이 18점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항목의 상대 비중이 36.5%일 경우,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A_{\text{중소기업}} = 18 \times 0.365 = 6.57$$

○ 나아가 이렇게 산출된 항목별 배점은 실무적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합의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 기반의 비중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수점 반올림을 통한 정수 배점 중심 체계로 단순화하였음

- 이때, 반올림 적용 이후 항목별 배점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1점 범위 내에서 최소 수준의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당해 조정은 부문 내 상대적 서열 및 비중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문합 100점이 정확히 유지되는 정수 기반 평가항목 배점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이는 전문가 합의 기반의 상대적 중요도와 실무 활용 측면의 효율성(실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표 4-49 | 평가항목별 배점 산출 결과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배점 환산 결과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8점)	지역자금 공급	100.0 (%)	18점
		계	100.0 (%)	18점
2	지역기업 지원 (18점)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36.5 (%)	7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21.1 (%)	5점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30.1 (%)	4점
		지역업체 거래 실적	12.3 (%)	2점
		계	100.0 (%)	18점
3	지역서민 지원 (18점)	지역서민 대출 지원	100.0 (%)	18점
		계	100.0 (%)	18점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점)	지점 및 출장소 수	62.1 (%)	9점
		자동화기기 수	37.9 (%)	6점
		계	100.0 (%)	15점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배점 환산 결과
5	지역인재육성 (12점)	지역 교육기관 기부	38.0 (%)	5점
		지역 장학사업	62.0 (%)	7점
		계	100.0 (%)	12점
6	지역일자리 창출 (8점)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9.1 (%)	4점
		지역인재 채용	50.9 (%)	4점
		계	100.0 (%)	6점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6점)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100.0 (%)	6점
		계	100.0 (%)	6점
8	기타 지역사회 기여 (5점)	정성평가	100.0 (%)	5점
		계	100.0 (%)	5점

□ 3단계: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 산출

-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가항목별로 확정된 배점(A_{jk})을 각 평가항목에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에 분배하여 최종 지표별 배점을 산출함
 - 구체적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동일 평가항목 내 최종 세부 지표 간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IQR 역시 기준 이내), 이들 지표 모두가 중요도 기준(3.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시 동일 항목 내에서는 균등 분할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함
 - 즉, 부문 j 및 평가항목 k 에 속한 세부 지표 수를 n_{jk} 라 할 때, 각 지표의 배점(S_{jkl})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S_{jkl} = \frac{A_{jk}}{n_{jk}} \quad (l=1, \dots, n_{jk})$$

- 또한, 이렇게 산출된 항목별 배점은 다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형태의 배점을 부여함
 - 이때, 반올림 적용 이후 지표별 배점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 1 점 범위 내에서 최소 수준의 조정을 실시하였고, 당해 조정은 각 항목 내에서 절대적 중요도 값이 낮은 지표를 대상으로 수행됨

| 표 4-50 | 세부 지표별 배점 산출 결과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중요도	배점 환산 결과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8점)	지역자금 공급 (18점)	지역 예대율	4.3	5점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3.8	5점
			지역 여신 비율	3.3	4점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4점
		계	-	18점	
2	지역중소기업(법 인) 대출 지원 (7점)	대출금액	3.9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8	2점	
		차주 수	3.8	2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7	1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5점)	대출금액	3.8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5	1점	
		차주 수	3.7	2점	
	지역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4점)	대출금액	4.1	1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6	1점	
		차주 수	4.0	1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5	1점	
	지역업체 거래 실적 (2점)	지역 업체 거래 비중	3.1	2점	
	계	-	18점		
3	지역서민 지원 (18점)	지역서민 대출 지원 (18점)	대출금액	4.0	5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8	4점
			차주 수	4.3	5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3.8	4점
		계	-	18점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점)	지점 및 출장소 수 (9점)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4.3	9점
		자동화기기 수 (6점)	자동화기기 수 비율	3.6	6점
		계	-	15점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중요도	배점 환산 결과	
5	지역인재육성 (12점)	지역 교육기관 기부 (5점)	기부액	3.3	3점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	3.0	2점
		지역 장학사업 (7점)	출연금(장학금)액	3.5	4점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3점
	계			-	12점
6	지역일자리 창출 (8점)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점)	대출금액	3.6	1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3	1점
		지역인재 채용 (4점)	차주 수	3.7	2점
			지역인재 채용 비율	4.1	4점
	계			-	6점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6점)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6점)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3.6	3점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3.5	3점
		계			-
8	기타 지역사회 기여 (5점)	정성평가 (5점)		-	5점
		계		-	5점

3. 최종 평가지표 체계 산출 결과

□ 최종 평가지표 체계의 구성 및 주요 특성

- 앞선 분석·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기반의 최종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
 - 최종 정립된 체계는 8개 평가부문, 14개 평가항목, 3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의 배점 구조로 설계됨
 -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측정함과 동시에,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고안된 것임
- 구체적으로, 해당 지표 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인 자금공급 및

금융접근성과 연관된 정량지표가 전체 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지역자금 역내 순환, 지역기업 지원, 지역서민 지원 부문의 배점이 각각 가장 높게 형성(18점)되어 평가지표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룸
- 이들 부문에서는 지역 예대율과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각각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 및 그 증가율 등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산업 기반 유지와 금융포용 확대에 기여하는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인재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부문을 평가지표 체계에 함께 포함함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당 기여도를 다층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정성평가를 위해 기타 지역사회 기여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금액화·지표화가 어려운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표 4-5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최종 평가지표 체계 (일반은행 및 상호금융 대상)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배점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8점)	지역자금 공급 (18점)	지역 예대율	5점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5점
			지역 여신 비율	4점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	4점
			계	18점
2	지역기업 지원 (18점)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7점)	대출금액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2점
			차주 수	2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1점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배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5점)	대출금액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2점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4점)	대출금액	1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1점
		지역업체 거래 실적 (2점)	지역 업체 거래 비중	2점
		계		
3	지역서민 지원 (18점)	지역서민 대출 지원 (18점)	대출금액	5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4점
			차주 수	5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4점
		계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점)	지점 및 출장소 수 (9점)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9점
		자동화기기 수 (6점)	자동화기기 수 비율	6점
		계		
5	지역인재육성 (12점)	지역 교육기관 기부 (5점)	기부액	3점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	2점
		지역 장학사업 (7점)	출연금(장학금)액	4점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3점
		계		
6	지역일자리 창출 (8점)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점)	대출금액	1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2점
		지역인재 채용 (4점)	지역인재 채용 비율	4점
		계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6점)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6점)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3점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3점
		계		
8	기타 지역사회 기여 (5점)	정성평가 (5점)		5점
		계		

□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적용상의 유의점

- 이미 언급한 것처럼, 최종 평가지표 체계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전국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유형별로 자산·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고, 사업구조·영업범위·지역사회 공헌 여력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대상집단에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 기관 간 비교의 타당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함
 - 또한, 같은 유형 안에서도 자산·자본 규모의 차이가 작지 않은바(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같은 지역 내의 기관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심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때, 그 기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금고 지정 자격을 갖춘 곳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본총액 대비 자산총액 비율 10% 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특히,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 대비 영업망이 제한적이며, 지점·출장소 및 자동화기기(ATM) 설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이러한 기관 특성상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에 대한 평가가 저축은행의 실제 역할과 역량을 왜곡하여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됨
 - 따라서 동일한 평가지표 체계를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을 제외하거나 평가 비중을 차별화한 보완적 평가지표 체계를 별도로 설계·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표 4-52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최종 평가지표 체계 (저축은행 대상)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배점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21점)	지역자금 공급 (21점)	지역 예대율	6점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5점
			지역 여신 비율	5점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	5점
		계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지표	배점
2	지역기업 지원 (21점)	지역중소기업(법인) 대출 지원 (8점)	대출금액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2점
			차주 수	2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2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지원 (5점)	대출금액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2점
		지역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6점)	대출금액	2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2점
지역업체 거래 실적 (2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지역 업체 거래 비중	2점	
계			21점	
3	지역서민 지원 (21점)	지역서민 대출 지원 (21점)	대출금액	6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5점
			차주 수	5점
			차주 수 이동평균 증가율	5점
계			21점	
4	지역인재육성 (14점)	지역 교육기관 기부 (5점)	기부액	3점
			기부액 이동평균 증가율	2점
		지역 장학사업 (9점)	출연금(장학금)액	5점
			출연금(장학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4점
계			14점	
5	지역일자리 창출 (9점)	지역청년 창업자금 대출 지원 (4점)	대출금액	1점
			대출금액 이동평균 증가율	1점
			차주 수	2점
		지역인재 채용 (5점)	지역인재 채용 비율	5점
계			9점	
6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7점)	지역 금융소비자 교육·보호 활동 실적 (7점)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수행 수준	4점
			일반 금융교육·상담 제공 수준	3점
		계		
7	기타 지역사회 기여 (7점)	정성평가 (7점)		7점
		계		7점

제 5 장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운영 방안 모색

제1절 평가수행 주체의 적합성 검토

제2절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운영 방안 모색

제1절

평가수행 주체의 적합성 검토

1. 적합성 검토 방식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방식

-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와 관련 제도·이론·선행연구 기반의 적합성 기준 도출·적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함
 - 이러한 이중적 검토 방식은 평가주체 선정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무적 현실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는 다음과 방식으로 수행됨
 - 조사 대상은 앞선 델파이 조사 때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담당 공무원 10명과 학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됨
 - 이들에게는 평가주체에 관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전문성, 공정성 측면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
 - 제1안: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243개 지역 각각에 대해서 모두 평가
 - 제2안: 광역자치단체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신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 각각에 대해서 모두 평가
 - 제3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관할 지역에 대해서 직접 평가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별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

- 아울러,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술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평가의 보편적 기준을 상세히 살펴봄
 - 이는 평가기준을 단순히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기인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정책평가 공식 지침, 미국 회계감사원(이하 GAO) 내부통제 기준, World Bank 및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의 정책평가 매뉴얼을 비롯해, 각종 학술적 논의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여러 평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적합성 검토 기준

- 앞서 살펴본 국내·외 관련 자료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섯 가지 평가기준을 도출함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기준
 - OECD(2020)는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olicy Evaluation(OECD/LEGAL/0478)’에서 공공정책 평가가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의 독립성(independence)과 객관적인 증거 기반(evidence-based assessment)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함
 - GAO(2014)의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또한 내부통제의 기본 요소로 책임성(accountability), 업무 분리(separation of duties), 독립적 검토(independent review)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이는 평가 수행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평가 기능은 가능한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같은 원칙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처럼 평가 대상과 지역사회 간 연고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이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 평가주체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 평가가 표준화된 절차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

○ 평가주체의 전문성 기준

- World Bank(2004)의 ‘Monitoring and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and Approaches’와 UNDP(2009)의 ‘Handbook on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for Development Results’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로서 평가자의 역량(capacity)과 전문성(professional competence) 보유를 제시함
- 이러한 국제적 기준들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필요성과 금융정보의 특수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확보 여부는 평가주체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중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 평가주체가 금융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역량(자료 분석, 정성·정량 통합평가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평가주체의 지역 이해도 기준

- Ostrom(2010)의 다중중심적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이론은 공공정책의 성과가 중앙에 의한 일방적·획일적 설계보다, 지역의 제도적 조건과 맥락(context), 현장 지식(knowledge of local conditions) 등을

이해하는 주체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러한 논의는 정책평가 역시 지역적 맥락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역시 그에 대한 평가주체가 지역경제 구조, 금융기관의 지역 내 역할, 지역사회의 수요 등 해당 지역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 이해도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 평가주체가 지역의 경제·사회·행정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와 금융기관 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성(embeddedness)을 갖추고 있는가?

○ 평가의 효율성 기준

- OECD(2019)의 ‘Government at a Glance’에서는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복(administrative duplication), 비표준화(non-standardization), 과도한 행정 부담(administrative burden)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의 표준화와 업무의 일관성이 필수적 요소라고 밝힘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역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적정한 행정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 이해도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 평가 수행에 필요한 행정 인력·예산 투입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구조인가?
 - 평가주체가 광역·기초 간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절차·기준의 표준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 평가 결과의 수집·분석·보고 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평가체계의 지속가능성 기준

- 행정안전부가 매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무편람(또는 운영지침)’ 및 감사·평가 관련 지침에서는 평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사순환 관리, 조직 안정성, 평가역량 유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보통 공공부문에서의 평가는 단기적·일회적 과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행정기능에 해당하며, 평가주체는 조직적 안정성을 갖추고 인사·조직 변화에도 그 활동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 평가주체가 인력·조직·제도 측면에서 평가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 인사순환이나 외부요인에 따른 평가 기능의 저하 위험이 낮은가?

2. 적합성 검토 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개요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 10명과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뤄짐
- 평가주체에 관한 세 가지 안(제1안~제3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일 안을 선택하도록 요청함
- 전문가 15명이 제시한 최종 선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안(행정안전부가 평가): 2명
 - 제2안(광역자치단체가 평가): 8명
 - 제3안(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평가): 5명

【 표 5-1 |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대안	대안 설명	선택 인원	비율
제1안	•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243개 지역 각각에 대해서 모두 평가	2명	13.3%
제2안	• 광역자치단체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신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 각각에 대해서 모두 평가	8명	53.3%
제3안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관할 지역에 대해서 직접 평가	5명	33.3%

-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제2안을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어서 제3안, 제1안 순으로 선호가 나타남
- 이처럼 가장 많은 전문가가 제2안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평가체계가 제도적·실무적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적·균형적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함

○ 대안별 선호 이유 및 주요 논거

- 제1안에 대한 평가: “일관성은 있으나 낮은 실행 가능성”
 - (전국 단위의 평가 일관성 확보) 동일한 기준 및 절차 등 중앙부처 주도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편차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음
 -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 행정안전부는 정책적 이해관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제1안에 대해 그 구현 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한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모든 지역 각각에서의 금융기관 기여도를 매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기함
- 제2안에 대한 평가: “전문성·실행 가능성·지역 이해의 균형”
 -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역량 및 지역 이해도 간의 균형)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업무 경험의 축적과 행정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금융·경제·사회적 여건을 중앙부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기초자치단체보다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유리)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처럼 특정 금융기관과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이나 관계 기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위) 중앙부처의 과도한 행정부담과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인력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정역량을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평가주체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제3안에 대한 평가: “지역 맥락 이해 측면의 강점”
- (개별 지역의 금융수요 및 지역사회 특수성 반영 가능)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평가할 경우 관할 지역의 주요 현안, 금융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실태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제기됨
 - (정책 참여도 및 책임성 강화) 직접 평가를 수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며, 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 책임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종합 정리
-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는 제1안(행정안전부가 평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행 가능성 문제로 그 선택은 매우 낮았음
 - 지역 이해도 및 객관성·전문성 등의 균형 측면에서 2(광역자치단체가 평가)안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지역 특수성 반영 측면에서는 제3안(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평가)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임
 - 즉,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 평가(제1안)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3안)라는 대조적인 두 방식을 지양하고, 양자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절충적 구조로서 제2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합성 검토 기준의 적용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제2안(광역자치단체)과 제3안(개별 자치단체 직접)을 중심으로 평가주체의 적합성을 검토함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측면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특정 기관이나 지역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이때, 제2안(광역자치단체)과 제3안(개별 자치단체 직접) 모두 외부위원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두 방식 모두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해당 위원회를 운영·지원하는 행정조직이 금융기관과 어떤 업무적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부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
 -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납, 각종 세입 관리, 민원처리 등 일상 행정업무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접촉하는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광역자치단체도 금고은행 지정 및 광역 차원의 재정업무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 접촉하지만, 각종 수납업무 및 지역 단위 재정집행과 같은 일상적·실무적 업무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임
 - 다만, 광역시의 경우는 다수의 재정업무를 자체 수행하는 만큼, 금융기관과의 접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행정적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 따라서, 외부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평가운영 과정에서는 각 행정단위의 업무 구조와 금융기관과의 접촉 방식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주체의 전문성 측면

- 전문성은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이 갖춘 능력에 따라 확보되는바, 외부위원 중심의 평가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구조임
- 다만, 위원회가 어떤 행정단위에서 구성·운영되는가에 따라 확보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폭에는 차이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광범위한 정책 영역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지역개발·사회지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폭넓게 위촉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보유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구성 자체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조직 규모와 네트워크 범위의 한계로 인해 전문인력 풀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존재함
- 즉, 동일 구조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의 폭은 광역-기초 간 조직 규모와 협력망 등의 차이로 인해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가주체의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측면

- 지역 이해도는 개별 평가위원의 역량뿐 아니라, 당해 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관련 자료의 범위와 깊이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행정구조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상이한 강점을 보유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사회·금융환경과 관련한 세부 행정자료를 일상적으로 생성·관리하고 있어, 평가위원회가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고밀도의 정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광역자치단체는 보다 넓은 관할 범위를 기반으로 시·군·구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비교하는 역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나, 개별 지역에 대한 미시적 현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임

-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좀 더 세밀한 지역 정보의 확보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간 종합·비교 분석에 각각 강점을 가지므로, 평가위원회의 설치 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성격이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의 효율성 측면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방식은 행정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여전히 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행정단위의 규모와 조직 역량에 따라 전체적인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파편적으로 수행될 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단일 절차로 정리·표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님
 - 즉, 광역 단위의 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할 경우 자료 수집, 평가 절차, 보고 체계 등이 통합적으로 정비될 수 있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반면,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절차가 243개 단위로 분산되며, 자료 수집·위원회 운영·보고 절차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함에 따라, 관련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는 특정 평가주체가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단위의 규모와 절차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평가체계 운영 시 필요한 행정자원의 투입 수준이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 평가체계의 지속가능성 측면

- 지속가능성은 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담당 조직의 안정성 및 인력배치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의 제도화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
 -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크고, 다양한 위원회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특정 기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행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담당자의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위원회 운영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기초자치단체 역시 제도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지만, 담당 인력이 적고 관련 기능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인사 교체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직·인력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행정단위의 규모와 기능 분장체계에서 비롯되는 차이로 이해될 수 있음

【 표 5-2 】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주체 적합성 검토 결과

검토 기준	제2안(광역자치단체)	제3안(개별 자치단체 직접)	상대적 우위
공정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시 제도적 공정성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시 제도적 공정성 확보 가능 	판단 어려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민간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할 수 있는 인적 기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가 위촉은 가능하나, 조직 규모 및 네트워크 범위의 한계로 전문가 풀 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제2안
지역 이해도·현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지역 단위 자료를 종합·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개별 지역의 세부 현장 정보의 확보는 개별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경제·사회·금융환경 등 미시적 자료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현황 파악에 유리 	제3안
효율성 (행정비용·절차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될 업무를 광역 단위에서 표준화·일원화 가능 • 자료 수집·평가·보고 체계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 행정비용 절감 여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3개 단위로 분산되어 자료 수집·평가·보고 체계가 각각 별도로 운영됨 • 금융기관은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함에 따라 업무 부담 증가 	제2안
지속가능성 (조직·인력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규모가 크고 위원회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을 전담할 행정구조 확보가 용이 • 담당자 이동에도 운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규모가 작고 운영 기능이 소수 인력에게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인사 교체 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음 	제2안

제2절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 유사 제도 사례 검토

□ 미국 CRA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¹¹⁾

- 미국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는 그 평가 결과가 금융기관의 인허가·영업점 설치·합병 승인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평가조직의 구성, 평가의 독립성, 자료 검증 체계 등이 매우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음
- CRA 평가조직의 형태
 -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는 단일한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세 곳의 감독기관(FRB, FDIC, OCC) 내의 여러 전문 평가팀에 해당함
 - FRB는 지주회사와 주(州)인가 연준회원은행(state member banks)을 감독하는데, 12개 연방준비은행의 Consumer Affairs 부문 내에 CRA 평가팀이 존재함
 - FDIC는 주(州)인가 연준비회원은행(state nonmember banks)을 주로 감독하며, 각 지역권역(regional offices)의 Division of Depositor and Consumer Protection(DDCP) 소속으로 여러 CRA 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음
 - OCC는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국립은행(national banks)과 연방 인가 저축기관(federal savings association)을 감독하고, 각 지역 감독사무소(district office)마다 CRA 평가팀이 존재함
- CRA 평가조직의 구성
 - CRA 평가팀은 각 감독기관(FRB, FDIC, OCC) 내부에 소속된 전문 평가관(Examiners)으로 구성되며, 기관별 조직 운영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 구성과 직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

11) 해당 내용은 OCC(2023), FRB(2023), FDIC(2023), FFIEC(2023) 등 CRA 관련 공식 매뉴얼 및 규정집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함

- 수석 평가관(Senior Examiner)
 - 평가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범위 확정, 현장조사 계획, 지역사회 의견 반영 방식 등을 관리함
 - 특히, 최종 평가보고서(Public Evaluation)의 검토 및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평가결과 등급 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책임을 짐
- 지역사회 담당 전문가(Community Affairs Specialist)
 - 지역사회 단체, 주거개발기관, 경제개발 단체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평가 대상 지역 내 금융수요, 금융취약계층 문제, 지역사회 요구 변화 등을 조사하고 평가과정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함
 - 또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실제 지역의 필요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음
- 재무·데이터 분석 전문가(Financial Analyst)
 - 대출·투자·서비스 지표의 데이터 검증을 담당하는바,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 분포, 점포 운영 현황, 투자 실적 등에 대해 통계적·재무적 분석을 수행함
 - 이때, FDIC, FRB, HMDA(Home Mortgage Disclosure Act)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음
- 규제 준수 담당 평가관(Compliance Examiner)
 - CRA 규정(Regulation BB), 공정대출법(ECOA), 주택저당공개법(HMDA), 소비자금융보호 규정 등 준수 여부를 검토함
 - 금융기관이 CRA 목적에 어긋나는 차별적 신용공급(redlining) 또는 특정지역 회피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음
- 현장조사 담당관(Field Examiner)
 -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 고객 접근성, 창구 운영 등을 관찰함
 - 지역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 대표와 직접 면담하여 기관의 실제 기여 수준이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이처럼 CRA 평가조직은 단일 직종의 전문가가 아니라 재무·회계·지역 개발·법률·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결합한 구조로 운영됨

- 이러한 구조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단순한 정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넘어, 현실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수적임

○ CRA 평가위원(Examiner)의 선정·자격 기준 및 독립성 확보 노력

- CRA 평가관은 감독기관 내에서 선발·양성되며, 전문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표 5-3] CRA 평가관(Examiner)의 자격요건

자격 요건	주요 내용
전문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지역경제·법제도 등 다분야 전문성 요구 • 상업은행·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 • 금융 감독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의 감독·검사 경험 • 대출 포트폴리오 분석, 재무제표 분석 능력 • 주택금융·지역개발금융·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 • Regulation BB, FDIC 규정, OCC Handbook 등 연방 규정 해석·적용 능력 • 통계·인구통계·경제지표 분석 역량 보유 • 금융기관 실무 경력이 너무 최근일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적용
이해충돌 방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장 엄격한 제도 중 하나임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배제 기준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3년 이내 평가 대상 금융기관 및 계열사 근무 이력 - 금융기관과의 금전적 이해관계(대출·투자 등) - 가족이 대상 금융기관 임원·고위직으로 재직 중인 경우 - 평가지역 내 부동산·사업 이해관계 보유 - 평가 대상과의 직·간접적 자문·용역 관계 존재 시 참여 배제

주: FRB, FDIC, OCC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CRA Examiner Qualification Standard에 근거함

- 한편, CRA는 평가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평가관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정치적·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음
 - 평가보고서는 팀 기반 합의 구조로 작성하여 단일 평가관의 의견에 의존하는 위험을 최소화함
 - 감독기관 내부의 Quality Review Board가 보고서를 재검증함
 - 평가 절차는 법령(Regulation BB)과 평가매뉴얼에 명문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함

○ CRA 평가 절차와 운영 방식

- CRA 평가는 단순히 제출자료만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복합적 절차를 포함하는바, 실제 평가과정은 총 여섯 단계로 이뤄짐

| 표 5-4 | CRA 평가 절차 및 운영 방식

절차	주요 행위	세부 내용
1단계	사전 분석 (Pre-Examination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범위·방향 설정 • 금융기관 규모·지점 분포·시장점유율·대출 포트폴리오 분석 • 지역 인구통계(인종·소득·주거 안정성 등) 및 경제 여건 검토 • 금융공급 현황 점검 및 평가구역(Assessment Area) 설정의 적정성 판단
2단계	자료 제출 및 검증 (Data Collection & Vali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제출 자료(대출·투자·서비스)의 전수 점검 • HMDA·지점 공시자료 등 공공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성·일관성 검증 • 필요 시 추가자료 요구 • 보고자료 오류·누락·과장 여부 확인이 핵심
3단계	지역사회 의견 수렴 (Community Contact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비영리·주택단체·경제개발단체 등과 면담 실시 • 금융기관의 관행, 금융소외, 대출 접근성 문제 조사 • 해당 의견은 평가보고서에 공식 반영
4단계	현장검증 (Field Exa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 방문을 통한 대출·서비스 접근성 수준 실사 • 운영시간·접근성·언어지원 여부 확인 • 고객 또는 지역기관 인터뷰로 서비스 품질 확인 • 평가의 현장성·정성적 판단을 담보
5단계	평가보고서 작성 및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지표(대출·투자·서비스)+정성지표(지역성·공정성·혁신성) 종합 • 기관 규모, 경쟁환경, 지역경제 특성 반영 • 등급 부여: Outstanding, Satisfactory, Needs to Improve, Substantial Noncompliance
6단계	결과 공개 및 사후검증 (Post-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전면 공개 • 감독기관 내부 검증(Quality Review)을 통한 일관성 확보 • 평가결과는 인허가·영업점 설치·합병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연계

□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의 형태
 - 당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연례 지역재투자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그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식 의사 결정기구임
 -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는 금융위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마련되어 있음
 - 즉, 해당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정위원회가 아닌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평가기구이며, 회의 소집·심의 범위·평가결과 확정 등에 관한 구체 절차 역시 금융위나 금감원의 내부 운영지침에 의해 규율됨
-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 등 공공부문 구성원과 지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특히 평가위원회는 정책·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기관을 중심축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관은 아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술적 타당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음
 - 금융위원회의 정책부서(은행과 및 중소기업과)는 제도 운영과 평가지표 설계에 관한 행정적·정책적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함
 - 금융감독원은 은행·저축은행 감독 부서(은행감독국 및 중소기업감독국)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제출자료에 대한 실무적 검증 기능을 수행함
 - 한국금융연구원은 평가지표 등의 산출·분석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음

- 그럼에도, 평가위원회 운영의 핵심 축인 위원장은 현재 외부 민간전문가가 맡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평가결과 확정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 또한, 민간 및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일부 참여함으로써 지역현장의 관점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은 정량지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현장 수요 변화 등을 평가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의 구성 원칙

- 금융위원회의 제도 도입 초기의 운영안¹²⁾과 연례 평가결과 발표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는 전문성, 대표성, 공정성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전문성 원칙
 - 지역재투자 평가는 자금순환, 지역경제, 중소기업,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실무적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함
 - 특히 평가과정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는 주로 한국금융연구원이 분석·산출을 담당하며, 금융감독원 또한 제출자료 검증과 기초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모두에서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음
- 대표성 원칙
 - 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중앙 정책·감독 기관, 지표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한국금융연구원),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부터 포함된 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됨
 - 이는 전국 단위의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지역별 경제·금융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성격이 반영된 설계에 해당함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0.2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 즉, 이러한 구성은 정책의 거시적 관점과 지역적 현실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
- 공정성 및 이해충돌 방지 원칙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의 특성상 이해충돌 방지 목적의 규율은 필수적인바, 평가 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평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 해당 원칙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역시 이와 동등한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자금 관리의 법적·제도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심의·의결 기구에 해당함
 - 금고 지정은 특정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법정 행정절차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때, 각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당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평가함
 -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보통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또는 내부위원 중 1인이 맡음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이러한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구성은 평가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적 판단을 가능하게 함

【표 5-5】 서울특별시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구성 인원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함

○ 금고지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법적 차원에서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 규정이 적용됨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조례 규정상 다음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킴
 -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이때,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

-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제안내용을 심사·평가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식적 심의기구로서 기능하는바, 그 운영 과정은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5-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절차	주요 행위	세부 내용
1단계	실무부서의 금고지정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위원회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으나,위원회 운영의 전제가 되는 금고지정 기본계획(공고, 일정, 제출 서류 등)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식적 절차적 틀을 형성함 • 이 단계에서 마련되는 정보가 위원회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위원회 입장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의 종류(제1·2 금고)와 지정 방식 - 위원회 회의 일정, 심의 범위 - 심의 시 참고할 제안서·근거자료 목록 - 발표 방식 및 질의응답 방식 사전 확정
2단계	실무부서의 제안서 접수 및 자료 사전 검토 (위원회 판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토”보다는 “심사·판단”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전 검토는 행정 실무부서가 담당함 • 해당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제출서류 접수 결과, 사실 관계 확인, 전산·보안 체계 등이 검토되는바, 이는 향후 위원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3단계	위원회 본회의 개최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본회의는 금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2회 회의로 모든 심의를 완료함 •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부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확인함 - 금융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금고운영 능력과 안정성을 직접 검토함 - 이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상호 논의를 진행함 -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함
4단계	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최종 금고 지정 •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금고약정 체결

2.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 구성·운영 방안 제시

□ 평가조직 도입의 정책적 의의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는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여러 금융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유인하려는 정책적 도구임
 - 해당 평가는 단순한 평가표의 작성이나 점수 산정이 아니라, 지역경제·금융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정책 행위로 보아야 함
- 이때, 앞서 살펴본 미국 CRA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바, 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조직 구조가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임
 - 미국 CRA의 경우 평가조직이 다수의 전문 직군으로 구성된 팀 기반 구조로 운영되며, 명확한 절차 매뉴얼과 다단계 검증체계에 따라 연례 평가가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도 금융정책 부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그리고 지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문·지역 기반의 삼중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감독규정의 근거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조직 또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인력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평가절차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수행할 평가조직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 금융·경제·사회 등 다면적 지식을 반영할 정도의 전문성
 - 지역의 현실과 주민 수요를 반영할 대표성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독립성
 - 지방행정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적 안정성

- 한편,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느슨한 평가조직 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의 취합·검증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 현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평가자료(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자료 등)를 1차적으로 관리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평가 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즉, 해당 구조는 ‘사전점검 → 교차검증 → 보정(validation) → 심의 제출’이라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도 동일한 형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실무부서가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여 평가조직에 이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료의 정확성·완결성·비교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사전검증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평가조직 구성·운영의 기본 방향

- 전문성 기반의 평가조직 설계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는 금융정책, 지역경제, 재정·회계, 법률, 행정, 통계·계량분석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이에, 해당 평가조직 역시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임
 - 금융정책·서비스 전문가
 - 지역경제·산업구조 전문가
 - 지역사회·복지·공공정책 전문가
 - 재정·회계·세무 전문가
 - 법률·규제·금융감독 전문가
- 대표성 및 균형성 확보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성(locality)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만큼,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그 평가조직은 지역의 현실과 정책적 맥락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참여는 평가의 제도적 정당성과 지역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됨
-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는 해당 지역의 실질적 요구와 현장 경험을 평가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 중심 논의에 따른 시각의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이해가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 평가조직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기관 또는 직군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촉기준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특정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고, 특정 안전과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 또는 기피되어야 할 것임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의·평가위원회(금고지정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용 중인 민간전문가의 과반 참여 원칙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는바, 당해 원칙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 구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미국 CRA의 경우 ‘평가계획 수립-자료 검증-현장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공개’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가절차를 정교한 표준 매뉴얼로 제도화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 역시 평가절차를 단계별로 표준화 하여 그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특히, 평가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가조직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요구됨

□ 평가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치단체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제1안)과 자치단체별 기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제2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자치단체 산하 별도의 평가위원회 설치안(제1안)

- 주요 특징

-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담 평가기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됨
- 이를 통해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 평가구조를 마련하여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
- 아울러 평가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금융정책, 지역경제·산업, 사회적 취약성 등 다차원의 전문적 시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확장과 평가기준 고도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임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인력·예산 부담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인구 규모가 작거나 행정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평가의 형식화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금융·경제·지역개발·사회정책·법률 분야 민·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평가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개별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수요가 평가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하 기초자치단체 추천 민간위원 또는 지역사회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공무원)이 수행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 한편, 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 자료 검증 → 지역 의견 반영(광역자치단체 내 설치 시) → 심의·의결 → 결과 공개’의 단계로 명확하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표준적 절차는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함

○ 자치단체별 기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활용안(제2안)

- 주요 특징

- 각 자치단체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이 높고 평가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가능함
- 특히 당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개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결과 역시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없이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그 평가 업무를 바로 담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당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평가기준(평가항목5)에 따라 이미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에 대한 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부터 평가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럼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수행해 온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는 자치단체 금고 지정을 위한 여러 심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했던 만큼, 향후 이를 독립된 평가체제로 확장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 포용성이나 지역산업·경제 기여 등 사회·경제적 가치 중심의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금고지정 심의 업무에 더하여 독립된 평가체계로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심의 범위와 책임이 확대되어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가 참여, 평가 전담회의 별도 운영, 실무부서의 분석·지원 역량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기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틀은 유지하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게끔 금융포용·금융소비자 보호, 복지·사회정책, 지역산업·경제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 정수 상한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준의 개정이 요구됨
 -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고지정 심의 외에 독립적인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의 목적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의사결정 절차 및 기준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업무 목적에 따라 회의체를 이원화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금고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금융기관 대상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권한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활용 방식과 정보공개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평가체계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앞선 제1안과 동일하게 ‘평가계획 수립 → 자료 검증 → 심의·의결 → 결과 공개’의 단계로 표준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평가자료 취합 및 검증 체계(제1,2안 공통 적용)

- 평가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자신이 활동한 각 지역 단위의 실적 자료를 광역자치단체 실무부서에 직접 제출하며, 제출 양식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전국 표준 서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특히, 제출자료의 항목, 단위, 범위, 기준시점 등에 대한 해석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체계 마련이 요구됨
- 광역자치단체 실무부서는 제출자료에 대해 기술적 오류, 형식상 결함, 수치의 이상치 및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표본검증 및 정정(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함
 - 해당 실무부서가 이러한 자료 검증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바,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정보처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즉, 실무부서는 단순 행정지원이 아닌 분석 기반의 전문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검증이 완료된 자료는 평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관되며, 평가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실무부서의 기술적 검증 역할과 위원회의 정책 판단 기능 간 역할 분담 구조가 형성됨
- 한편, 중앙정부는 표준 매뉴얼(지표 정의 및 산출 기준) 제공, 기술적 질의응답, 보조적 검증 기능 등을 통해 전국 단위에서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지원함
 - 이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확인되는 오류 유형 및 그 해결 방안 등을 축적·공유하여, 평가제도의 균질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표 5-7 |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자료 취합 및 검증 체계

행위자	주요 역할	수행 내용
금융기관	평가자료 제출(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지역별 실적자료를 자치단체 실무부서에 직접 제출 • 중앙정부 표준 서식 준수
자치단체 실무부서	평가자료 취합·관리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오류 및 형식상 누락 점검 • 수치 이상치 및 정합성 검토 •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표본검증 및 정정 요구 •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정보처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 병행
평가위원회	검증자료에 기반한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부서 검증자료를 근거로 한 독립적 평가 수행
중앙정부	평가기준 표준화 및 제도 운영 안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매뉴얼 제공·관리 • 기술적 자문·지원 및 보조적 검증 수행 • 전국 단위 평가기준의 일관성 유지

국내 및 해외 문헌

- 권진욱·김영재·신한나·배준규. (2021).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정원문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7(4): 335-345.
- 고승희. (2014).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김은경·민병길·김지혜. (2017).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경기연구원.
- 김재현·이미홍·이효정·장주연. (2012).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른 지역사회발전 효과성 분석: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지리경제학회지. 15(2): 258-273.
- 신재민·김경희·윤경자·우승영·간기현. (2023). 사회적기업과 기업의 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1(2): 97-146.
- 양준호. (2021).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지역재투자법(CRA)': 미국 지역재투자법 관련 논쟁과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7(4): 95-125.
- 양준호. (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미국 '지역재투자법': 지역 금융의 '사회적 조정'에 초점을 맞춰. 인천학연구, 36(1): 139-178.
- 여효성·김봉균.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석현·박래수. (2009).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은행의 조달과 대출의 경기순응성, 한국 경제의 분석, 15(3): 97-145.
- 이건범. (2010).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동향과 전망. 78:89-117
- 이병윤. (2024).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이슈리포트, 2024-06, 한국금융연구원.
- 이상재. (2022). 미국 지역사회재투자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1331(9), 1-12. 한국금융연구원.
- 이종필·손헌일·장창민. (2022).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부산연구원.
- 한국은행. (2006).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경험과 시사점. 해외경제정보. 제2006-110호.

- Apgar, W. C., & Duda, M. (2003).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Past Accomplishments and Future Regulatory Challenges. *Economic Policy Review*, 9(2): 169-191.
- Avery, R. B., Calem, P. S., & Canner, G. B. (2003). The effects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on local communities. Proceedings 878,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 Barr, M. S. (2005). Credit where it counts: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and its critic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80(2): 513-652.
- Blakely, E. J., & Leigh, N. G. (2013). *Plann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5th ed.). Sage.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Ismail, Maimunah.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Role in Community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Vol 2(9).
- Levine, R. (2005).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 Lucas,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Makhdoom, N. M. (2009).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al climate during undergraduate clinical teaching years in the College of Medicine, Taibah University. *Journal of Taibah University Medical Sciences*, 4(1): 42-5.
-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Duckworth.
- Nurkse, R.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Paris: OECD Publishing.
- Ostrom, E. (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641-672.

- Passas, I. (2024). The Evolution of ESG: From CSR to ESG 2.0. *MDPI Sustainability*, 4(4), 112.
- Patil, S. (2021). From CSR to ESG – How has corporate governance evolved.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 9(7): 1–6.
- Porter, M. E., & Kramer, M. R. (2011). Creating shared value: Redefining capitalism and the role of the corporation in society.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 Romer, P.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Samolyk, K. (1992). “Bank Performanc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Evidence of a Regional Credit Channel,”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 92-04.
- Shah, D. K., Piryani, S., Piryani, R. M., Islam, M. N., Jha, R. K., & Deo, G. P. (2019).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years at Chitwan Medical College in Nepal.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0: 555–562.
- Stiglitz, J. E. (1994).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40). Washington, DC: World Bank.
- Sutton, C. N. & Jenkins, B. (2007). *The Role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Expanding Economic Opportunity*. Cambridge, MA: Harvard Kennedy School, CSR Initiative.
- Todaro, M. P., & Smith, S. C. (2015). *Economic Development* (12th ed.). Pearson.
- Wachter, S. & Ding, L. (202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Housing Policy Debate*, 30(1): 1–3.

기타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0.2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8.28.).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3).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Final Rule』. Washington, DC: Federal Reserve System, OCC, FDIC.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Modernization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R48096). Washington, DC: U.S. Congress.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3). Home Mortgage Disclosure Act (HMDA) Data Requirements and Filing Instructions Guide. Washington, DC: CFPB.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2023). Consumer Compliance Examination Manual – Community Reinvestment Act. FDIC.
-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FFIEC). (2023).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Data & Information. FFIEC..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4).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Washington, D.C.: GAO
- Federal Reserve Board. (2023). CRA Examination Procedures for Large, Intermediate Small, and Small Institutions. Washington, DC: Federal Reserve System.
- OECD. (202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olicy Evaluation (OECD/LEGAL/0478).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23). Regional Outlook 2023: The Longstanding Geography of Inequalities.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22). CRA Examiner Training and Qualification Standards. Washington, DC: OCC.
- World Bank. (2004). Monitoring and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 approaches. Washington, DC: World Bank.

부 록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양식 일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적합성 및 중요도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의 의뢰를 받아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개요

- 평가대상: 「지방회계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세 가지 유형(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나누어 평가)
- 평가단위: 243개 각 지역(시·도, 시, 군, 구)별 활동 내용
- 평가결과 활용: 243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 시 반영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영역을 9개 부문의 16개 항목으로 구분한 뒤, 총 37개의 평가지표(정량지표 36개, 정성지표 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사를 통해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할 적정 평가주체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신다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책임자: 전영준 부연구위원
문의: 010-7132-1143

※ 작성 방법 안내

마지막 문항까지 응답을 완료하신 후 본 엑셀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간에도 저장을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 평가지표 확인하기](#)

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영역별 세부지표의 적합성

문 1-1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전체 금융기관을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평가부문 1-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지역 자금 액내 순환 세부 지표들에 대해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지역 자금 액내 순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예대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총수신액
			지역 예대를 개선 수준	금년도 지역 예대율-전년도 지역 예대율
			지역 여신 비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전국 총여신액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 증가율은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실제 얼마나 계속해서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도		중요도				
			부적합	적합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지역 자금 액내 순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예대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예대를 개선 수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여신 비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여신액 이동평균 증가율(3개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전 페이지](#)

[▶다음페이지](#)

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영역별 세부지표의 적합성

문 1-4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전체 금융기관을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평가부문 1-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세부 지표들에 대해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4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지역 점포+출장소 수) / (지역 인구×0.001)
	(※저축은행은 해당 부문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지역 자동화기기* 수 / (지역 인구×0.001) * 점포와 다른 곳에 설치된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도		중요도			
			부적합	적합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전 페이지](#)

[▶다음페이지](#)

3.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부문 중요도

문3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평가 부문 중요도입니다.

9개의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 비중의 총합이 각각 100%가 되도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9개의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 비중의 총합이 각각 100이 되도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숫자만 입력)

번호	평가부문	중요도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2	지역기업 지원	
3	지역서민 지원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5	지역인재육성	
6	지역일자리 창출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8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9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	
합계		0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양식 일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적합성 및 중요도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1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조사에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중요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귀하의 1차 조사 응답결과를 이번 2차 조사에 활용됩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한 모든 전문가들이 평가하신 각 지표별 중요도의 '평균' 및 '4분위수 범위'와 함께,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을 보여드립니다. 1차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응답을 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 조사 응답은 1차 조사 때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책임자: 전영준 부연구위원
문의: 010-7132-1143

※ 작성 방법 안내

마지막 문항까지 응답을 완료하신 후 본 엑셀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간에도 저장을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 설문 응답 시작하기](#)

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영역별 세부지표의 적합성

문1-1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전체 금융기관을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지역 자금 여내 순환 세부 지표들에 대해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지역 자금 여내 순환	지역 예대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총여신액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금년도 지역 예대율-전년도 지역 예대율
		지역 여신 비율	해당 지역 총여신액 / 전국 총여신액
		지역 여신액 이용평균 증가율(3개년)	※ 증가율은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실제 얼마나 계속해서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응답결과			2차 중요도 평가				
			평균	1분위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전혀 중요지 않음 (1점)	중요지 않음 (2점)	보통 (3점)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5점)
지역 자금 여내 순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예대율	4.2	4~5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예대율 개선 수준	3.7	3.5~4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여신 비율	3.4	3~4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여신액 이용평균 증가율(3개년)	3.5	3~4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전 페이지](#)

[▶다음페이지](#)

1.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영역별 세부지표의 적합성

문1-4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전체 금융기관을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평가부문 1-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세부 지표들에 대해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4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저축은행은 해당 부문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지역 점포+출장소 수) / (지역 인구×0.001)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지역 자동화기기 수 / (지역 인구×0.001) * 점포와 다른 곳에 설치된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응답결과			2차 중요도 평가				
			평균	1분위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전혀 중요지 않음 (1점)	중요지 않음 (2점)	보통 (3점)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점 및 출장소 수	점포 및 출장소 수 비율	4.3	4~5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동화기기 수	자동화기기 수 비율	3.8	3~4.5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전 페이지](#)

[▶다음페이지](#)

3.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부문 중요도

문3

다음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위한 9개 부문-16개 항목-37개 지표들(정량 36개, 정성 1개)입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평가 부문 중요도입니다.

9개의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 비중의 총합이 각각 100%가 되도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9개의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 비중의 총합이 각각 100이 되도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숫자만 입력)

번호	평가부문	1차 응답결과			2차 평가 (상대적 중요도)
		평균	1분위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1	지역자금 역내 순환	15.9	12.5~20	5	
2	지역기업 지원	17.8	15~20	20	
3	지역서민 지원	15.3	15~20	20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4.2	9~20	5	
5	지역인재육성	9.5	5~10	20	
6	지역일자리 창출	11.9	9~15	20	
7	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5.7	4.5~9	5	
8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4.6	5~5	3	
9	기타 지역사회 기여(정성평가)	5.1	4.5~5	2	
합계		100	100~100	100	0

[◀이전 페이지](#)

[▶응답결과 확인하기](#)

정책연구 2025-08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저 자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12월 10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